

목 차

< 제 1 차 본회의 >

1. 불법건축물처리등진상파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183
2. 특위운영계획및활동결과보고 ————— 184

< 제 2 차 본회의 >

3.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215
4. 평창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227
5. 평창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 ————— 232
6. 평창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 242

< 제 3 차 본회의 >

7. 평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49
8. 평창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254

< 기 타 >

9. 평창군관내전화통화권확대에관한건의문 ————— 258

10. 민원처리사항

- 가. 농어촌버스비수익노선운행에따른결손액지원요청에관한건의
(강원여객(주), 평창운수(주)) _____ 259
- 나. 마을안길농로및도수로확포장에관한진정(평창읍 여만리
엄노섭외35인) _____ 266
- 다. 마을농로확.포장에관한건의(평창읍 중1리 김봉태외138인)
_____ 268
- 라. 건축사업무협조에관한건의(강원도건축사회) _____ 270
- 마. 고길천소교량설치에관한건의(평창읍 상리 이만호외53인)
_____ 274
- 바. 오대천하천부지에전문대및공설운동장조성과관련한진정
(진부면 하진부리 곽문춘외 19인) _____ 276
- 사. 운교1리간이상수도집수장재설치에대한진정(방림면 운교1리
김만수의 37인) _____ 278

- 11. 불법건축물처리등진상파악특별위원회활동을위한주요제출서
류(평창군) _____ 280

불법건축물처리등진상파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안 번호	58
----------	----

제안년월일 : 1996년 3월 일

제안자 : 김 두 경 의원
의 6인

□ 주 문

1.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군민의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봉평면지역의 도시계획법상 소방도로 예정지에 중축한 불법 건축물 처리와 하천 무단 점용 및 축사 불법건축등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하고자 한다.
2. 위원수는 7인으로 하고 운영기간은 8일간으로 하며, 원활한 특위운영을 위하여 서류제출요구, 관계인 출석요구 및 현지확인 활동등을 병행 실시한다.

□ 제안이유

최근 봉평면지역에서 집단 민원화 되고 있는 불법 건축물과 하천무단점용등에 대한 일련의 집단행동에 대한 명확한 의회차원의 진상을 파악 민선자치시대의 적법한 행정 추진과 위법부당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시정 개선 의지를 촉구 하고자 함.

불법건축물처리등진상파악특별위원회
운영계획및활동결과보고

['96. 3. 11 ~ 3. 18(8일간)]

불법건축물처리등진상파악특별위원회

- 불법건축물처리등진상파악특별위원회 -
운 영 계 획

불법건축물처리등진상파악특별위원회운영계획

최근 봉평면지역에서 면장사퇴로 발단 민원화 되고 있는 불법건축물과 하천무단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일련의 집단행동에 대해 의회차원에서 그 진상을 파악 민선자치시대의 적법한 행정추진과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시정·개선 의지를 촉구하고자 함.

□ 기 본 계 획

- 운영기간 : '96. 3. 11 ~ '96. 3. 18(8일간)
- 위원회명 : 불법건축물처리등진상파악특별위원회
- 대상사업 : 2건(도시계획 구역내 불법건축물증축(문중옥식당), 하천 무단용도변경 및 방목(평촌1리 광희중 축사))
- 위 원 수 : 위원7인 이내
- 위원회구성
 - 위원장 : 이경진 위원
 - 간 사 : 우강호 위원
 - 위 원 : 유돈문 위원, 이상훈 위원, 이수현 위원, 김두경 위원, 김종영 위원

□ 세부시행계획

1. 특별위원회 운영 일정

일시	차수	내용	비고
'96. 3. 11(월) 15:00	제1차특위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 2. 특위활동현지확인계획협의 3. 서류제출 및 관계인 출석요구	소회의실
'96. 3. 12(화)	-	○ 의정활동자료수집	
'96. 3. 13(수)	-	○ 의정활동자료수집	
'96. 3. 14(목) 10:00	-	○ 사업장현지확인(2개소)	봉평면
'96. 3. 15(금) 10:00	제2차특위	1. 불법건축물처리등진상파악의견 (질의·답변)	소회의실
'96. 3. 16(토) 10:00	-	○ 특위활동 결과보고서 작성	소회의실
'96. 3. 17(일)	-	○ 의정활동 자료수집	
'96. 3. 18(월) 14:00	제4차특위	1. 특위활동결과보고서채택	소회의실

2. 서류제출 및 관계인 출석 요구

가. 서류제출요구 : "붙임" 서류제출 요구서에 의함.

나. 관계인출석요구 :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하고, 그외 관계인에 대하여는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 협조 요구(출석요구서"붙임"참조)

3. 현지확인계획

가. 확인일정

- 1) 일 시 : '96. 3. 14(목) 10:00
- 2) 장 소 : 봉평면 창동1리 문종옥 식당 외 1개소
- 3) 대상사업장 : 2개소

(가) 봉평면 창동1리 문종옥 식당(고래뱃속 식당)

(나) 봉평면 평촌1리 광희중 축사(속칭:마진터)

4) 현지확인반

(가) 인 원 : 10명(위원 7, 사무보조3)

(나) 확인반

- 총 팔 : 위원장 이경진
- 반 장 : 간 사 우강호
- 반 원 : 유돈문 위원, 이상훈 위원, 이수현 위원
김두경 위원, 김종영 위원
- ※ 위원아닌 의원 : 의장 김낙운
- 사무보조: 사무과장 이경식 외2명

5) 현지확인 방법

- 관계 제출서류에 의거 대상사업장 현지확인
- 집행부 관련 부서의 사업추진경위 및 주민여론청취, 현장 질의.답변

나. 시간계획

시 간			활 동 사 항	비 고
부터	까지	소요		
-	10:00	-	. 봉평면 도착	
10:00	14:00	240	. 현지확인 자료수집	사업주관 부서협조
14:00	15:00	60	. 사업추진경위 청취 및 확인(문중옥 식당)	
15:00	16:00	60	. " (곽희중 측사)	"
16:00	17:00	60	. 현지확인 결과 종합	
17:00	-	-	. 종 료	

다. 행정사항

1) 현지확인 자료준비

- 대상사업 : 대상사업 목록에 의한 사업 (붙임)
- 자료제공 : 집행부에서 대상사업별로 추진상황 작성 제출
- 자료제공일 : '96. 3. 14. 09:00 한
- 자료제공부수 : 11부(집행부 제출 14부)

2) 현지 이동차량 확보

- 현지도착 및 귀가 : 개별차량
- 현지활동 : 의회차량 활용 (2대)

3) 특위활동 경비대책 : 의정활동경비에서 집행

4) 기타사항

- 활동상황별 기록유지
- 보조자료 수집 및 현지확인 활동 보조
- 기타 참고인에 대한 전화 및 구두로 사전출석 협조

서류제출요구서

평창군수 귀하

평창군의회가 제39회 평창군의회(임시회) 기간중 불법건축물처리등 진상 파악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서류제출을 요구 하오니 기한내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서류 : 목록 따로 붙임.
2. 제출기한 : 1996년 3월 14일(목) 09:00
3. 제출장소 : 평창군의회 사무과
4. 제출부수 : 14부
5. 기타 필요한 사항
 - 서류작성 - A4복사용지 상철(워드프로세서로작성:서류사본별도)
 - 편 첩 : 대상사업별로 작성 합철(목차)

1996년 3월 11일

불법건축물처리등진상파악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진

서 류 제 출 요 구 목 록

건 명	제 출 대 상 사 업	비고
<p>1. 도시계획구역내 불법건축물 증축 과 관련사항</p>	<p>가. 대상사업장 : 봉평면 창동리 286-5번지 문정옥 소 유 점포 (일명 고래벳속 식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물증축현황 (도면표시 첨부) 및 건축물대장 2) 건물증축 추진경위 및 추진상황(관련서류 사본) 3) 건물에 대한 불법건축물 단속 및 지도점검 내역 조치상황 및 금후대책(관련서류일체사본첨부) 4) 식품접객업 허가 경위(관련서류 사본 첨부) 5) 관련법규 발췌서 <p>나. 위와 관련한 민원사항(관련서류일체사본첨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원발생현황 및 처리상황 2) 관계기관 고발현황 <p>다. 감사결과 및 언론보도사항(관련서류사본첨부)</p>	
<p>2. 하천 무단용도변 경및 불법건축물 설치와 관련사항</p>	<p>가. 대상사업장 : 봉평면 평촌1리 광희중 소유 축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축사건축현황 (하천도면 표시 첨부) 2) 사업추진 경위 및 추진상황(관련서류 사본첨부) 3) 불법건축물 단속 및 지도점검, 조치사항 및 금후 처리대책(관련서류 사본 첨부) 4) 하천무단용도변경경위 및 처리결과 5) 관련법규 발췌서 <p>나. 위와 관련한 민원사항(관련서류 사본 첨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원발생 현황 2) 관계기관 고발 현황 <p>다. 감사결과 및 언론보도사항(관련서류사본첨부)</p>	

관계인 출석 요구서

평창군수 귀하

평창군의회가 제39회 평창군의회(임시회) 기간중 불법건축물처리등 진상 파악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에 있어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관계인 출석을 요구합니다.

1. 출석일시 : 1996년 3월 15일 - 1996년 3월 16일(2일)
2. 출석장소 : 의회소회의실
3. 출석요구이유 : 불법건축물처리등 사업추진에 대한 질의·답변
4. 기 타
가. 출석일시및장소,관계인 : (붙임참조)

1996년 3월 11일

불법건축물처리등진상파악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진

출석일시 및 관계인

출석일시	출석장소	출석대상 공무원	비고
'96.3.15 10:00	의회 소회의실	부군수, 사회과장, 축산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봉평면부면장, 봉평면산업개발계장	※민원발 생당사자 별도출석 (3명)
'96.3.16 10:00	의회 소회의실	부군수, 내무과장, 사회과장, 축산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봉평면부면장, 봉평면산업개발계장	

- 불법건축물처리등진상특위 -
활동결과보고

불법건축물처리등진상파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1. 활동개요

가. 목 적

최근 봉평면 지역에서 면장 사퇴로 발단 집단 민원화되고 있는 불법 건축물과 하천 무단 용도변경등에 대한 일련의 집단행동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그 진상을 파악, 민선자치시대의 적법한 행정추진과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시정·개선을 촉구하고자 함.

나. 활동기간 : '96. 3. 11 ~ 3. 18(8일간)

다. 구성인원 : 7인

라. 특위구성

- 위원장 : 이경진 위원
- 간 사 : 우강호 위원
- 위 원 : 유돈문 위원, 이상훈 위원, 이수현 위원, 김두경 위원
김종영 위원

※ 사무보조 : 사무과장외 2인

마. 심사대상

구 분	대상사업내용	대상부서	비 고
문종옥 식당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중측사항 · 식품접객업허가사항 	- 사회과, 도시과 봉평면	창동1리
곽희중 측사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무단용도변경 및 방목 사항 · 측사 불법건축 	- 측산과, 건설과 도시과, 봉평면	평촌1리

바. 심사일정

일정별	구 분	활 동 내 용	장 소
'96. 3.11 (월)	제1차특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및 간사선임 · 현지확인 계획협의 · 서류제출 및 관계인 출석요구 	소회의실
'96. 3.12 (화)		· 의정활동 자료수집	
'96. 3.13 (수)		· 의정활동 자료수집	
'96. 3.14 (목)	현지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동1리 문종옥 식당 · 평촌1리 곽희중 측사 	봉평면
'96. 3.15 (금)	제2차특위	· 관계공무원, 외부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	소회의실
'96. 3.16 (토)	-	· 특위활동결과보고서 작성	"
'96. 3.17 (일)		· 의정활동 자료수집	
'96. 3.18 (월)	제3차특위	· 특위활동 결과보고서 채택	"

2.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및 제안자: 1996년 3월 4일 김두경의원의 6인

나. 회부일자 : 1996년 3월 11일

다. 상정일자

1) 제39회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96. 3. 11)

- 특별위원회구성,위원선임

2) 불법건축물처리등진상파악특별위원회의

(가) 제1차불법건축물처리등진상파악특별위원회의('96. 3. 11)

- 위원장,간사선임

- 현지확인 계획협의

- 서류제출 및 관계인 출석요구

(나) 현지확인 ('96. 3. 14)

- 봉평면 창동1리 문중옥 식당(고래땃속)

- 봉평면 평촌1리 박희중 농가

(다) 제2차 불법건축물처리등진상파악특별위원회의('96. 3. 15)

- 불법건축물처리등진상파악을 위한 질의·답변(관계공무원,외부참고인)

(라) 불법건축물처리등진상파악특별위원회활동 결과보고서 작성('96. 3. 16)

-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작성 및 협의(소회의실)

(마) 제3차 불법건축물처리등진상파악특별위원회의('96. 3.18)

- 불법건축물처리등진상파악특별위원회활동 결과보고서 채택

3) 제39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3차본회의('96. 3.18)

- 불법건축물처리등진상파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

3. 활동결과

가. 현지확인

1) 일 시 : '96. 3. 14(목) 10:00~17:00

2) 장 소 : 봉평면 창동1리 문종옥 식당(고래뱃속)

봉평면 평촌1리 박희중 축사

3) 현지확인반

○ 인 원 : 10명(위원 7, 사무보조 3)

○ 확인반

- 총 팔 : 위원장 이경진

- 반 장 : 간 사 우강호

- 반 원 : 유든문 위원, 이상훈 위원, 이수현 위원, 김두경 위원,

김종영 위원

※ 위원아닌 의원 : 의장 김낙운

- 사무보조 : 사무과장 외 2명

4) 일 정

시 간			활 동 내 용	비 고
부 터	까 지	소 요		
-	10:00	-	. 봉평면 도착	
10:00	14:00	240	. 현지확인자료수집	
14:00	15:00	60	. 사업추진경위청취 및 확인 (창동1리 문종옥 식당)	
15:00	16:00	60	. 사업추진경위청취 및 현지확인 (평촌1리 박희중 농가)	
16:00	17:00	60	. 현지확인결과 종합	
17:00	-	-	. 귀가	

5) 현지확인 방법

가) 관련 제출서류에 의거 대상사업장 현지확인

나) 집행부 관련부서의 사업추진경위 및 주민여론청취,
현장 질의·답변

6) 현지확인결과

가) 문종옥 식당(고래뱃속) 관련

- 건축물 대장과 건물 실측면적 상이
⇒ 과거 불법 증축부분 건축물 대장 미등재
- 식품접객업 구조변경허가시 불법증축부분 판단 착오
⇒ 행정처리 혼란초래
- 문종옥 식당(고래뱃속) 증축부분
⇒ 경미한 위법사항으로 판단
- 봉평도읍정비사업과 관련된 건축물 행정관리 소홀
⇒ 집단민원 야기

나) 팍희중 농가 축사시설 관련

- 사업시행 당시 하천 무단용도변경 사항
⇒ 행정기관, 당사자 모두 간과함.
- 급박한 공기로인한 무리한 사업추진
⇒ 지도·점검등 소홀, 특히 축사배치는 군의 책임 사항임.
- 불법건축물 소유주의 철거능력 부족
⇒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한 합리적인 대책 필요.

나. 질의.답변 요지

질 의	답 변
<p>< 문중옥 식당(고래벧속) 관련분야 ></p> <p>1) 문중옥 소유건물 불법건축에 대한 고발처리가 늦어진 경위는 ?</p> <p>2) 문중옥의 식당(고래벧속) 우측 돌출부분은 불법건축 부분과는 관련이 없는 데도 이 부분에 대해 구조변경 보완후 영업허가할 한 이유는?</p> <p>3) 불법건축물 처리계획에서 도시계획상 도로에 포함된 불법건축부분에 대해 일체의 권리행사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임시 철거 및 유보 조치코자 한 계획은 불법건축물을 인정하는 내용은 아닌지 ?</p>	<p>- 당초 6.27 4대동시 지방선거시 불법사항이 이루어진 걸로 인정한 후, 2차에 걸쳐서 원상복구 지시를 내렸고 이러한 과정에서 9월까지 지연된 것임.</p> <p>- 실제 건축물대장상 일직선으로 되어 있고, 현지 출장시 우측부분이 돌출이 된바 불법건축부분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음.</p> <p>- 면장이 새로 부임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집행 할 수 없는 사항이 있어서 소방도로가 날때까지는 당분간 영업을 하되, 소방도로가 나게되면 자진철거를 하도록 처리계획을 세운것이고 사실상 백지화 되어 고발하기로 계획을 변경 하였음.</p>

질 의	답 변
<p>4) 처음에는 지붕수리로 신고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지붕일부하고 벽체를 쌓았는데 처음부터 재지를 못한 이유는 ?</p>	<p>- 강력히 처리를 못한 이유는 실무자가 구두상으로 단속을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차 철거 종용을 하였으나 당사자의 강력한 항변으로 지도가 안되어 사실상의 단속을 못했던 것임.</p>
<p>< 광희중농가불법측사시설 관련 ></p>	
<p>5) 측사 용자금에 대해 이월을 시키는등 구제 방향은 ?</p>	<p>- 정상적인 사업추진시 6개월간 운용할 수 있으나 현재는 철거명령이 되는등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96년도 사업중에서 일부를 지원토록 하여 급한 문제를 해결할 계획임.</p>
<p>6) 농수산부훈령에 사업의 계획 및 추진의 안내, 사후관리등에 대해 군수가 책임을 지도토록 되어 있는데 광희중씨가 이를 근거로 행정소송등의 제기시에 대한 대책은?</p>	<p>- 사업주체는 당해 농가로써 농가의 실수에 의해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써 행정소송의 문제로까지는 발전되지 않으리라 보며, 단지 군이나 면에서의 행정지도 소홀로 인해 농가에 손실을 준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함.</p>

질 의	답 변
<p>7) 관련 규정에 의거 관리 책임자,상담원등에 대해 지정을 한후 사업을 추진 하였는가?</p>	<p>- 개별적으로 어느사업장에 대해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사항은 없고, 읍면단위에 축산직 공무원이 전담 공무원으로 배치되어 있으므로 면 축산담당 공무원의 당연한 사무임으로 별도지정을 않했음.</p>
<p>8) 사업확정이 지연통보 되어 동결기로 인한 공기의 확보가 어려운 바,무리하게 사업을 시행한 이유는 ?</p>	<p>- 사업의 규모상 결빙기 이전에 끝낼것이라 판단하였으며 ,또한 자력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에 의해서 업자시행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부족한 공기는 아니라 판단을 한것임.</p>
<p>9) 축산농가의 불법건축물 자진철거 능력이 부족한 바 철거기한을 연기해줄 용의는?</p>	<p>- 하천내 불법건축물 철거통보(3월4일)를 하였으나 (3.1~3. 30 1개월의 기한으로 통보함) 계속 축사의 건축이 필요시 이전장소 준비등에 필요한 기간에 대해 연기를 검토하겠음.</p>

질 의	답 변
<p>10) 측사시설이 착공된후에 불법건축물로 간주되어 조치를 하였는 바 사업 시행당시에 불법임을 알지 못한 이유는 ?</p>	<p>- 기초 터파기시 담당직원이 출장하여 줄자로 확인 하였으나 도면이 준비되지 않았고, 기존 성토가 되어 농지로 경작을 해온 관계로 하천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여 불법사항임을 몰랐던 것임.</p>
<p>< 기타관련 분야 ></p>	
<p>11) 전봉평면장에 대해 직위 해제 대상의 명분이 되며 군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한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는 ?</p>	<p>-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 공무원의 품위를 유지 못한 것과 측사건축은 신고사항인데도 신고처리를 안하고 불법건축물이 되도록 방치하므로써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켰으므로 면장의 책임이라 판단되어 직위해제나 징계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였음.</p>
<p>12) 탄원서의 내용에 사표는 반려해주기로 약속을 하였다는데 사실인가 ?</p>	<p>- 이미 사표에 대한 보고가 되고 접수가 된 사항인 지라 과장선에서 반려가 어렵지 않겠느냐고 답변을 하였는데 제삼 요구를 하여 추후 검토를 하여 보겠다고 하였음.</p>

다. 시정·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1) 봉평지역 집단민원 발생에 대하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집단민원을 직접 또는 하부조직으로 하여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
- 그러나 동지역 집단민원을 적극 해결하고자 하는 자치단체의 장의 의지가 부족하여 행정내부의 사항들이 각종 매스컴에 보도되므로 군민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사료되는 바, 자체 엄정한 조직관리로 금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각별한 대처와 지역내의 문제가 대내외에 전파되어 집단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는 내부 결속이 요구됨.
- 금번 민원처리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당해 면장의 사표등은 자치단체의 장과 직접 관련이 되는 사안이 있었음에도 이를 장기간 묵살 하므로 하부행정의 부재를 초래하고 있는 바, 조속한 시일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 행정 정상화를 기하여야 할 것임.

2) 불법건축물 처리와 관련하여

- 봉평면이 관련 민원을 처리하면서 결재권자가 2회에 걸쳐 결재를 보류하므로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이 지연되도록 한것은 민선시대의 자치단체의 장이 일방적인 민원처리에 대한 지시가 있었다는 전 봉평면장의 주장이 일면의 근거가 있었다고 보는 바, 이는 주민자치의 실현을 선도할 자치단체의 장의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며, 행정집행에 혼선을 초래한다고 사료 되는 바, 자치단체의 장의 일관성 있는 법집행의 의지가 요구됨.
- 위법사항에 대해선 집행기관의 체계적인 강력한 지도·감독이 있어야 할 것임에도 행정기관 내부의 각 부서간 행정집행 의지가 결여되어 관계공무원의 형식적인 지도방문등은 관련주민의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초래케한 원인이 되는 바, 금후 대민행정을 주도하는 실무공무원들의 새로운 의식 개선이 요망됨.

4) 광희중 축사시설과 관련하여

- 집행기관이 사업 대상자를 연도말에 교체하면서 모든 행정 절차를 사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나, 군은 당해면장에게 사업시행을 일임하고, 당해면은 무소신한 사업시행으로 일관하여 사전에 충분히 위법사항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현지출장지도, 관련자료 연찬등을 소홀히 하여 건축물 마무리 단계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되어 농가가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보게 되었음.
- 이는 지도·관리기관인 군과 당해면의 책임하에 사업의 전과정을 농가와 직접 실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것이 원인이 되었고,
- 특히, 관계공무원이 건축물부지 실측과정에서 농지전용 도면에 의하면 하천부지임을 명백히 알 수 있음에도 이를 확인치 않는등 군과 면이 행정절차 지원을 소홀히 한것 또한 주 원인이라 사료되므로,
- 관계공무원의 사업시행절차 준수 소홀에 대한 책임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재정적 손실보전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 이와관련 공직자에 대한 특별지도·교육으로 금후 이러한 행정누수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특별조치가 필요 할 것임.

3) 문종옥 식당(고래벧속)과 관련하여

- 관계공무원이 불법사항에 대한 지도·단속을 소홀히 하여 지역내 집단 물의를 야기한 바, 이는 실무공무원의 소신없는 행정집행으로 내부결속과 행정질서를 흐트러지게 한 결과를 초래 하였다고 봄.
- 식품접객업 구조별 허가에 따른 출장지도·점검시 불법증축부분에 대한 판단 착오로 행정처분의 혼선을 초래케 한 사실은 군과 면의 업무협조가 미흡하다고 보며, 특히 관련 허가중 교부시 정상적인 절차(군→면→민원인)에 의하여야 함에도, 군의 실무계장이 직접 민원인을 방문 교부한 것은 특정 민원인에 대한 특혜의 오해소지가 있다고 사료됨.
- 이러한 사안등에 비추어 자치단체의 엄정한 행정집행이 요구되는 자치시대에 집행기관 내부의 일관성 없는 행정추진으로 지역주민간 화합을 저해하는 지역문제를 야기시킨 것은 적법한 행정절차를 준수치 않은 것이 원인이 되는 바, 금후 법규준수에 대한 공직자 특별교육과 자치단체의 장의 행정질서 개선 의지가 요구됨.

4. 활동결과조치계획

가. 특위활동결과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들은 집행부에 통보하여 향후에는 신중하고 합리적인 행정처리로 군민을 위한 서비스 행정이 실현되어 군민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함이 타당함.

< 특별위원회 회의 >



- ① 일시 : 1996. 3. 15 제2차 진상파악특별위원회 회의
- ② 내용 : 관계인 출석 질의·답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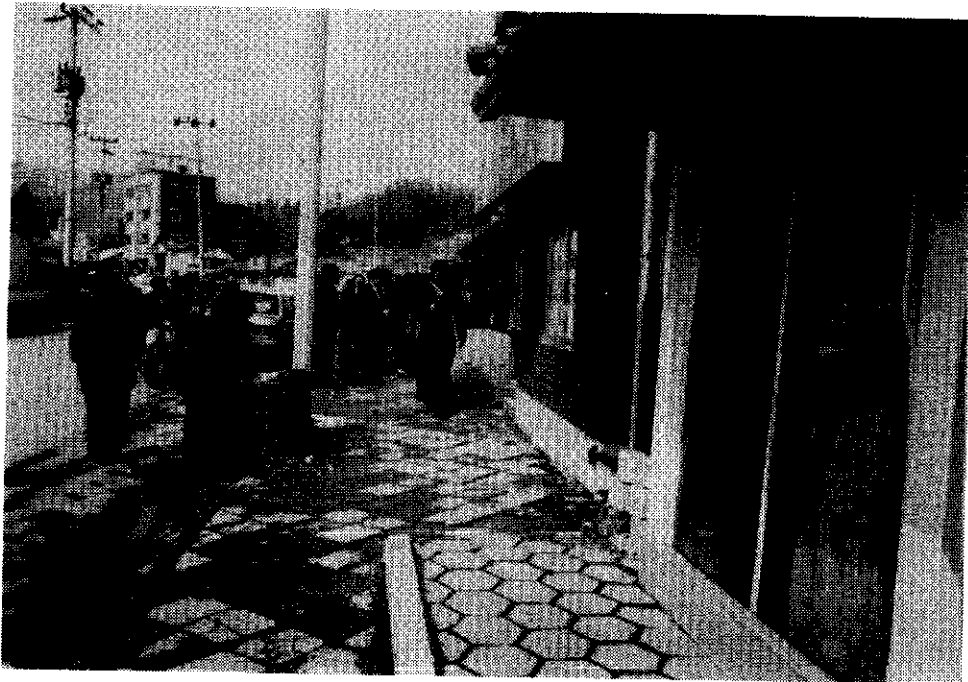
- ① 일시 : 1996. 3. 18 제3차 진상파악특별위원회 회의
- ② 내용 : 진상파악특위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

< 현 지 확 인 >

- 일 시 : 1996. 3. 14
- 장 소 : 봉평면 창동1리 문종옥 소유 식당
- 전 경



- 현지확인활동 -



< 현 지 확 인 >

- 일 시 : 1996. 3. 14
- 장 소 : 봉평면 평촌1리 광회중 소유 축사
- 전 경



- 현지확인활동 -



해 명 서

평창군 봉평에 사는 문종욱입니다.

우선 금번 문제의 대상으로 오르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번 문제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하여 보조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옥주와 세입자는 계약당시 부분 보수를 제기한 세입자에게 도시계획 정비가 될 때 다시 헐고 집을 지어야 할 것이니 모든 문제는 세입자가 책임지기로 했으나 도면과 같이 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문제로 면장님과 담당계장님, 직원을 집주인이 도의적인 입장에서 찾아뵈은 일은 있었으나 군수님을 두 부부가 찾았던가, 전화를 하였었던가, 불법을 합법화 해 달라고 청탁을 하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도면 설명 내용과 같이 37cm 뜨럭(계단)위에 벽면을 설치한 것이 위법이라 생각지 않았던 수리자의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주민에게 피해가 되거나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물적 손해를 입히거나 도로상 점유 불편을 초래하였을 때 위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담당 공직자는 이를 허용하면 문제가 된다고 하나 저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해당 공직자가 건축물 대장을 변조해 준다거나 뇌물을 받고 눈감아 주거나 했을 때는 공직자가 처벌을 받겠지만 모든 면에 아무 피해 없이 주민 편의 차원에서 처리하였을 경우는 공직자가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는 주민과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공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규제 차원에서만 생각하는 소국보다 모든 면에서 피해나 큰 불법이 아닌 한 주민 민생 차원에서 넓은 도량을 발휘해 주시면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명서에서 밝힌 것처럼 친면 차원에서 군수님을 찾아가 불법을 합법화 해 달라고 한 것 같이 그런 거짓말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누가 성명서를 작성했는지 한번쯤 사실 확인을 했었으면 이런 우를 범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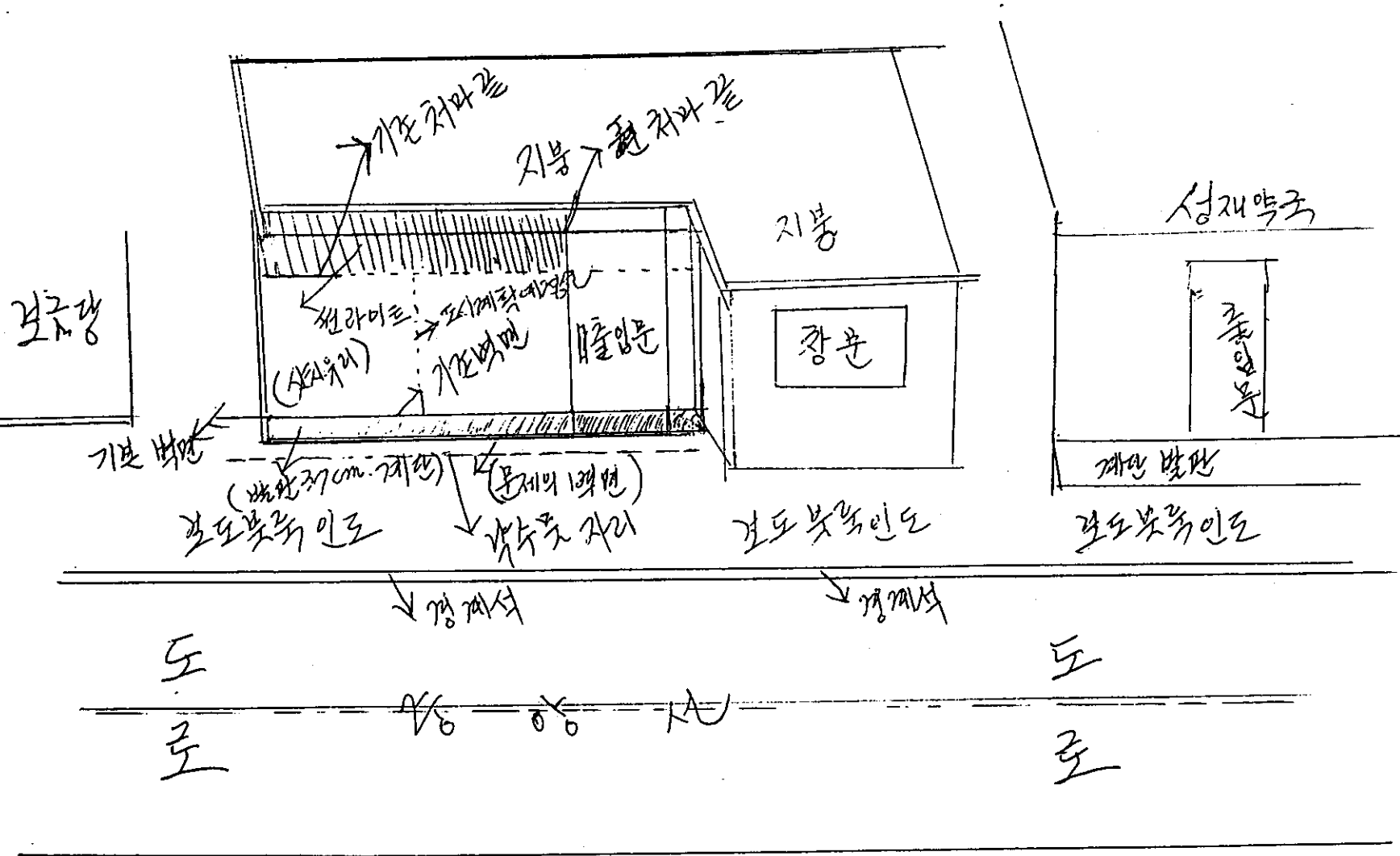
찾아간 일로 청탁을 한 사실도 없습니다.

성명서를 작성한 분이 너무나 경솔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방문 면접을 했으면 기록이 있을텐데 확인도 하지 않고 한쪽 말만 철석같이 믿고 행동하는 것은 대단히 유치하고 경솔한 처사입니다.

모쪼록 현명한 행동을 보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같은 면민이며 이웃이니까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는 바른 생각을 해 주심을 바랍니다.

1996년 3월 1일

해명자 문종욱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2
----------	----

제출연월일 : 1996. 2.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의 휴가중 연가일수를 근속년수에 따라 확대 조정하고, 공무원의 정치적행위에 관한 내용을 복무조례에 삽입 정치적중립을 명문화 하였으며, 또한 현실과 맞지 않는 명칭 등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를 3일에서 20일까지 실시하던 것을 4일에서 최고 23일까지로 연간 연가일수를 확대·조정 하였음(안제18조)
- 나. 소속 공무원의 연가계획 수립시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 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안제19조 제1항)
- 다.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음(안제23조 제6항)
- 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립하도록 정치적 행위에 관한 내용의 조항을 신설하였음(안제27조 제1항 및 제2항)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당직근무)”를“(당직 및 비상근무)”로 하고, 동조제1항중“당직근무자(이하“당직근무자”라 한다)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로 하며, 동조제2항중“당직근무자”를“당직 및 비상근무자”로,“당직근무”를“당직 및 비상근무”로 하여 이를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당직근무”를“당직 및 비상근무”로 하여 이를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제3항 전단중“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근무시간”을“근무시간등”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의 단서중“토요일에는”을“중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근무시간의 변경)”을“(근무시간등의 변경)”으로 하고, 동조중“근무시간”을“근무시간 또는 근무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근 속 기 간	연 가 일 수
3월 이상 6월 미만	4 일
6월 이상 1년 미만	7 일
1년 이상 2년 미만	10 일
2년 이상 3년 미만	13 일
3년 이상 4년 미만	16 일
4년 이상 5년 미만	19 일
5월 이상 6년 미만	22 일
6년 이상	23 일

②제1항의 근속기간은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④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의 제목“(연가 일수에의 산입)”을“(연가일수에서의 공제)”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결근일수·휴직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제21조제1항중 “허용”을 “허가”로 하고,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또는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계산한다.

제22조제1호 및 제3호중 “참가하려 할 때”를 각각 “참가할 때”로 하고, 동조 제5호를 제7호로 하며, 동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6.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제23조제1항중 “휴가”를 “경조사휴가”로 하고, 동조제2항중 “휴가”를 “출산휴가”로 하며, 동조제3항중 “생리휴가”를 “여성보건휴가”로 하고, 동조제4항중 “휴가”를 “수업휴가”로 하며, 동조제5항중 “특별휴가”를 “포상휴가”로 하고, 동조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제23조제6항중 “휴가”를 “승선휴가”로 하고, 동조제7항중 “휴가”를 “퇴직준비휴가”로 하여 이를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소속기관의 장은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산정은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26조제1항중 ‘법 제56조의 규정’을 ‘지방공무원의영리업무의한계에관한규정(대통령령)’으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정치적 행위)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 (당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 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이하 "당직근무자"라 한다)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② 당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③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7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 ----- ----- ----- ----- 당직근무 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 ----- ----- ----- -----</p> <p>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에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 ----- ----- 당직 및 비상근무 ----- -----</p> <p>④ 당직 및 비상근무 ----- -----</p>	<p>제10조 (파견근무) ①·② (생략)</p> <p>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외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p>	<p>제10조 (파견근무)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제외공무원복무규정 (대통령령) ----- ----- -----</p>

현 행	개 정 안																																		
<u>제2장 근무시간</u>	<u>제2장 근무시간등</u>																																		
제13조 (근무시간) ① (생략) ②중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u>토요일에는 중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u>	제13조 (근무시간) ① (현행과 같음) ②----- ----- <u>중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u> -----.																																		
제14조 (<u>근무시간의 변경</u>) 군수는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u>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u>	제14조 (<u>근무시간등의 변경</u>) ----- ----- ----- <u>근무시간 또는 근무일</u> -----.																																		
제18조 (연가일수) ① <u>공무원의 근속기간(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다) 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u>	제18조 (연가일수) ① <u>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u>																																		
<table border="1">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근 속 기 간</th> <th style="text-align: center;">연가일수</th> </tr> </thead> <tbody> <tr><td style="text-align: center;">3월이상 6월미만</td><td style="text-align: center;"><u>3일</u></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6월이상 1년미만</td><td style="text-align: center;"><u>7일</u></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1년이상 2년미만</td><td style="text-align: center;"><u>8일</u></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2년이상 3년미만</td><td style="text-align: center;"><u>11일</u></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3년이상 4년미만</td><td style="text-align: center;"><u>14일</u></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4년이상 5년미만</td><td style="text-align: center;"><u>17일</u></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5년이상</td><td style="text-align: center;"><u>20일</u></td></tr> </tbody> </table>	근 속 기 간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u>3일</u>	6월이상 1년미만	<u>7일</u>	1년이상 2년미만	<u>8일</u>	2년이상 3년미만	<u>11일</u>	3년이상 4년미만	<u>14일</u>	4년이상 5년미만	<u>17일</u>	5년이상	<u>20일</u>	<table border="1">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th> <th style="text-align: center;">연가일수</th> </tr> </thead> <tbody> <tr><td style="text-align: center;">-----</td><td style="text-align: center;"><u>4일</u></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td><td style="text-align: center;"><u>10일</u></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td><td style="text-align: center;"><u>13일</u></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td><td style="text-align: center;"><u>16일</u></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td><td style="text-align: center;"><u>19일</u></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u>5년이상 6년미만</u></td><td style="text-align: center;"><u>22일</u></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u>6년이상</u></td><td style="text-align: center;"><u>23일</u></td></tr> </tbody> </table>	-----	연가일수	-----	<u>4일</u>	-----	----	-----	<u>10일</u>	-----	<u>13일</u>	-----	<u>16일</u>	-----	<u>19일</u>	<u>5년이상 6년미만</u>	<u>22일</u>	<u>6년이상</u>	<u>23일</u>
근 속 기 간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u>3일</u>																																		
6월이상 1년미만	<u>7일</u>																																		
1년이상 2년미만	<u>8일</u>																																		
2년이상 3년미만	<u>11일</u>																																		
3년이상 4년미만	<u>14일</u>																																		
4년이상 5년미만	<u>17일</u>																																		
5년이상	<u>20일</u>																																		
-----	연가일수																																		
-----	<u>4일</u>																																		
-----	----																																		
-----	<u>10일</u>																																		
-----	<u>13일</u>																																		
-----	<u>16일</u>																																		
-----	<u>19일</u>																																		
<u>5년이상 6년미만</u>	<u>22일</u>																																		
<u>6년이상</u>	<u>23일</u>																																		
②제1항의 근속기간에는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을 산입하지 아	②제1항의 근속기간은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무원(국가공무																																		

현행	개정안
<p>니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원을 포함한다)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p>
<p>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별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 ③ (생략)</p> <p>④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상 제18조이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봉급액을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p>	<p>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④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p>
<p>제20조(연가일수에의 산입) ①결근일수, 휴직일수, 직위해제일수 및 정직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 산입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생략)</p>	<p>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결근일수, 휴직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1조(병가) ①군수는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용할 수 있다.</p>	<p>제21조(병가) ①----- ----- ----- 허가 ----- -----.</p>

현행	개정안
<p>(후단 신설)</p> <p>1. ~ 2. (생략)</p> <p>② ~ ③ (생략)</p> <p>제22조(공가)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p> <p>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 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려 할 때</p> <p>2. (생략)</p> <p>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p> <p>4. (생략)</p> <p>(신설)</p> <p>(신설)</p> <p>5.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p> <p>제23조(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3]의 기준에 의한 휴가를 얻을</p>	<p>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또는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계산한다.</p> <p>1. ~ 2. (현행과 같음)</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22조(공가) -----</p> <p>-----</p> <p>-----</p> <p>-----</p> <p>1. ----- 참가할 때</p> <p>-----</p> <p>2. (현행과 같음)</p> <p>3. ----- 참가할 때</p> <p>4. (현행과 같음)</p> <p>5.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p> <p>6.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p> <p>7. -----</p> <p>제23조(특별휴가) ①-----</p> <p>-----</p> <p>----- 경조사휴가 -----</p>

현행	개정안
<p>수 있다.</p> <p>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 이내의 <u>휴가</u>를 얻을 수 있다.</p> <p>③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마다 1일의 <u>생리휴가</u>를 얻을 수 있다.</p> <p>④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u>휴가</u>를 얻을 수 있다.</p> <p>⑤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1회에 한하여 6일 이내의 <u>특별휴가</u>를 허가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⑥월 15일이상 선박에 승선근무한 공무원은 7일 이내의 <u>휴가</u>를 얻을 수 있다.</p> <p>⑦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과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지</p>	<p>-----.</p> <p>②-----</p> <p>----- <u>출산휴가</u> -----</p> <p>-----.</p> <p>③-----</p> <p><u>여성보건휴가</u> -----.</p> <p>④-----</p> <p>-----</p> <p>-----</p> <p>----- <u>수업휴가</u> -----.</p> <p>⑤-----</p> <p>-----</p> <p>----- <u>포상휴가</u>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u></p> <p>⑥소속기관의 장은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산정은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p> <p>⑦-----</p> <p>----- <u>승선휴가</u> -----.</p> <p>⑧-----</p> <p>-----</p> <p>-----</p> <p>-----</p>

현행	개정안
<p>나,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한기간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u>휴가</u>를 얻을 수 있다.</p> <p>제26조 (겸직허가) ①공무원이 <u>법 제56조의 규정</u>에 의한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② (생략)</p> <p>제2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p>	<p>-----</p> <p>-----</p> <p>-----</p> <p>----- 퇴직준비휴가 -----</p> <p>-----.</p> <p>제26조 (겸직허가) ①-----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의한계에관한규정 (대통령령) -----</p> <p>-----</p> <p>-----</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7조 (정치적 행위) ①법 제57조의 규정에</p>
	<p>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p> <p>1. 정당의 조직·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p> <p>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p> <p>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p> <p>②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p> <p>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p>

현 행	개 정 안
	<p>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p> <p>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p> <p>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p>

관 계 법 령 발 취 서

□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정치운동의 금지)

- ① 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 ② 공무원은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투표를 하거나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2. 서명운동을 기획·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 또는 도서를 공공시설등에 제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 ③ 공무원은 다는 공무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행위의 보상 또는 보복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평창군이장정수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3
------	----

제출연월일 : 1996. 2 .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제안이유

일부 행정리의 아파트 및 연립주택단지 신축으로 인한 인구과밀 현상으로 단일 행정리로는 리행정 추진 및 주민자치능력 제고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바, 행정리 분리를 통하여 주민편의 증진 및 자치능력 확대를 통하여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함.

주요골자

가. 진부면 송정1리중 기존 농촌주택단지를 송정1리로, 송정1리 7반 석미아파트 지역(송정리중 대지 2537, 2538, 2539번)을 송정3리로, 단독 주택단지지역238필지(2506 -1 ~ 2640)를 송정4리로 분리조정

평창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이장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진부면란중 송정2리 다음에 송정3리 및 송정4리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지】

읍면명	리명	이장정수	분리구명	구역
진부면	송정리	1	송정3리	송정리중 2537대, 2538대, 2539대
		1	송정4리	송정리중 2506의1 ~ 11대, 2507의1 ~ 10대, 2508의1 ~ 6대, 2509의1 ~ 12대, 2510의1 ~ 12대, 2511의1 ~ 6대, 2512의1 ~ 12대, 2513의1 ~ 6대, 2514의1 ~ 8대, 2515공원, 2516의1 ~ 2대, 2516의3잡, 2516의4대, 2517의1 ~ 2대, 2518의1 ~ 2대, 2519의1 ~ 2대, 2520의1 ~ 15대 2521의1 ~ 8대, 2522의1 ~ 10대, 2523의1 ~ 12대 2524의1 ~ 18대, 2525의1 ~ 10대, 2526의1 ~ 6 대, 2527의1 ~ 12대, 2528의1 ~ 6대, 2529의1 ~ 12대, 2530의1 ~ 7대, 2531공원, 2532의1 ~ 8대 2533의1 ~ 4대, 2534의1 ~ 8대, 2535의1잡, 2535의2 ~ 3대, 2536의1잡, 2536의2 ~ 3대, 2640도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					제2조(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				
읍면명	리 명	이장정수	분리구명	구 역	읍면명	리 명	이장정수	분리구명	구 역
합계		183			합계		185		
진부면 (33)	송정리	2	송정1리 송정2리	종전 도암면 호명2리 일원 종전 도암면 호명3리 일원	진부면 (35)	송정리	4	송정1리 송정2리 송정3리 송정4리	종전 송정1리 일부 종전 도암면 호명3리 일원 종전 송정리중 대2537번 ~ 대2539번 종전 송정리중 대2506의1번 ~ 도로 2640번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분합할 때에는 법률로써 정하되, 시·군 및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폐지·분합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자치구가 아닌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분합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④ 리의 구역은 자연의 부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분합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⑤ 동·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동·리("행정 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 ⑥ 제⑤항의 행정 동·리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평창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6. .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의안 번호	54
----------	----

제안이유

대통령령 제14,857호('95. 12. 29)로 국내여비규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평창군여비조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사항을 규정하는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상시 출장공무원의 여비 및 월액여비의 지급대상등을 규정함.(안 제2조)

다. 국내여비규정 준용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라. 국외여비규정 준용사항을 규정함.(안 제4안)

평창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

평창군여비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상시출장공무원의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 3 조(국내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국내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8조 제1항, 제3항 및 제16조 제3항 단서중 "소속 장관"은 "각각군수"로 본다.
2. 제8조 제3항 중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및 제16조 제3항 단서중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17조 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 제2조"는 "동규칙 제17조"로 본다
4. [별표 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으로, 동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전문직공무원 규정"은 "지방전문직규정"은 "지방전문직공무원 규정"으로, 동표 제4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 규정"으로 본다.

제 4 조(국외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국외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국외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8조 제1항의 "소속장관"은 군수로 본다.
2. 제9조 제2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3. 제21조 및 제26조 제4항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4. 제24조 제1항 단서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관 제 법 령 발 체 서

□ 국내여비규정

제 8 조 (여비지급의 예외)

- ① 소속장관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의 정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소속장관은 특별한 사유를 인하여 이 영에 의한 여비산정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해당자에 대한 여비의 정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16조 (현지교통비등의 감액)

- ③ 같은 곳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현지교통비 및 숙박료는 그 곳에 도착한 다음 날로 부터 가산하여 15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할, 30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2할, 60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3할에 상당한 액을 빼고 지급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 또는 지역실정에 비추어 본문의 감액비율의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장관은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감액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17조 (근무지내출장시의여비)

- ①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에는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 10,000원을, 4시간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5,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차량배정자와 동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유지비를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관용의 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0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 ② 제1항에서 "근무지내 출장"이라 함은 동일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군 및 도서(제주도를 제외한다)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 국외여비규정

제 8 조 (여비감액 및 공제)

- ① 소속장관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의 정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정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9 조 (여비지급의특례)

- ② 대통령특사(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특사로 임명된 자를 포함한다)의 여비에 관하 여는 외무부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 (가족여비)

- ① 가족여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다 지급하지 아니하되, 정신적 육체적인 장애로 인하여 부모에 의존하여 동거하는 26세이상의 자녀로서 소속장관이 확인하는 자녀와 외국에서 다른 지역 또는 본 국으로 전근하는 경우에 출국시 가족여비를 지급 받은 29세미만의 미혼자녀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한다.

1. 부임 또는 전근할 때 소속장관의 허가를 얻어 가족을 근무지로부터 신근무지까지 동반할때
2. 외국근무중 소속장관의 허가를 얻어 1회에 한하여 가족을 그 근무지에 불러 가거나 본국에 귀국시킬 때
3. 외국에서 4년이상 계속근무한 자가 소속장관의 명에 의하여 본 국에서의 재교육을 위하여 배우자와 18세미만의 자녀를 동반하여 일시 귀국할 때. 다만, 4년마다 1회에 한한다.

4. 주재국의 급격한 정세변화로 인하여 동반가족을 철수시킬 때
5. 외국근무중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배우자를 동반한공무여행을 할 때
6. 제26조 제3항의 경우 소속장관의 허가를 얻어 본인을 대신하여 가족중 1인이 일시 귀국할 때
7. 외국근무중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연 1회에 한하여 국내 대학에 취학중인 자녀를 그 근무지에 불러 가거나 국내 대학에 취학중인 자녀를 방문하게 하기 위하여 배우자를 일시 귀국시킬 때
8. 근무조건이 극히 불리하다고 외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근무중인 자가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연 1회에 한하여 가족동반으로 전지휴양을 할 때
9. 본국에서 외국으로 부임한 후 부임명령을 받은 다음 날로부터 1년이내의 소속장관의 허가를 얻어 1회에 한하여 가족을 부임명령을 받은 당시의 국내 거주지로부터 국내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킬때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의 가족여비는 가족 1인마다 다음 각호에 규정한 액의 합계액을 지급한다.

1. 부모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본인이 여행할 때의 철도임, 선임, 항공임 및 자동차임의 전액과 일비.숙박비.식비 및 준비금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액
2. 12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는 본인이 여행할 때의 철도임, 선임, 항공임 및 자동차임의 전액과 일비.숙박비.식비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액
3. 12세미만의 자녀에 대하여는 본인과 같은 등급의 철도임.선임.항공임 및 자동차임의 전액과 본인이 여행할 때의 일비.숙박비.식비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액

- ③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 귀국한 경우에 있어서는 국내 체류중 1월의 범위안에서 국내여비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 체재비 (운임에 있어서는 소속장관이 허가한 여행의 경우에 한한다)를 지급한다.
- ④ 제1항제 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의 가족여비는 본인이 여행할 때와같은 등급의 철도임.선임.항공임 및 자동차임의 실비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하는 자녀의 항공임은 2등정액으로 한다.
- ⑤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의 가족여비는 구거주지를 구근무지로, 신거주지를 신근무지로 간주하여 국내여비규정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제24조 (외국근무중 퇴직 또는 휴직된 자의 여비)

- ① 외국근무중에 퇴직 또는 휴직된 자가 그 발령된 날로부터 1월이내에 귀국할 때에는 그 해당직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형사사건 또는 징계 처분에 의하여 퇴직된 자이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6조 (사망장에 대한 여비등)

- ① 공무원(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및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을 포함한다)이 외국여행 또는 외국근무중 사망한 때에는 사망자의 처리 수습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망자 유족중 1인에게 여행지 또는 근무지까지의 여비와 사체운구비를 지급한다.

- ② 제1항의 여비는 7일의 범위안에서 국내여비규정 별표1 여비지급구분표의 제3호 해당자의 여비를 제10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고, 사체운구비는 실비를 지급하되 사후 정산한다.
- ③ 제1항의 경우에 근무지에 동반중이던 가족이 1월이내에 귀국한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에 준용하여 계산한 가족여비를 지급한다.
- ④ 외국여행중 또는 외국근무중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소속장관의 허가를 얻어 일시 귀국할 때에는 제10조 및 제16조의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

□ 관용차량관리규정

제 2 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라 함은 각급 행정기관이 관리·운영하는 차동차와 원동기를 장치한 3륜차를 말한다
2. "차량소속기관"이라 함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받은 각급 행정기관 을 말한다.
3. "차량교체"라 함은 차량을 동일차형의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4. "차량교환"이라 함은 각급 행정기관간에 동일차형의 차량을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5. "차량의정수이체"라 함은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행정기관에서 다른 행정기관으로 차량 정수를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6. "차종변경"이라 함은 승용, 승합용, 화물용 및 특수용차량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7. "차형변경"이라 함은 동일차종의 대형, 중형, 소형 및 지프형 상호간에 차형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제 4 조 (차량의구분등)

- ① 차량의 차종은 승용(전용 및 업무용), 승합용, 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형은 차종별로 대형, 중형, 소형 및 지프형으로 구분한다.

제 17 조 (실태조사 및 시정조치)

- ① 총무처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의 차종 및 차형별 정수와의 일치여부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 ② 총무처장관은 제1항의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기관으로 하여금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 3 조 (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량의 차종별 차형·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 연한은 별표1과 같다.

□ 지방공무원법

제63조 (휴직)

②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수시로 고용될 때.
2.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3.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4. 자녀(휴직신청당시 1세미만인 자녀에 한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될 때.
5. 사고 또는 질병등으로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 국가공무원법

제71조 (휴직)

②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수시로 고용될 때.
2.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3.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4. 자녀(휴직신청당시 1세미만인 자녀에 한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5. 사고 또는 질병등으로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평창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5
----------	----

제출년월일 : 1996. 2.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제 안 이 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을 "기본지원사업" 및 "주민복지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자금사용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하려는 것임.

주 요 내 용

"주민복지지원사업"을 신설(안 제2조)

평창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평창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1조에 의거 평창군발전소주변지역(이하 "발전소주변지역"이라 한다)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창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사업 지원등 특별회계 운용과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본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소득증대사업과 공공시설사업을 말한다.
2. "주민복지지원사업"이라 함은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발전소로서 기본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발전소주변지역 및 동일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증대, 주거환경의 개선 기타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하는 것으로 한다.
3. "융자금"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거 주민에게 융자하는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을 말한다.
4. 법 제10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4항의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대상자에 있어서 "1인당"이라 함은 1가구당 1인을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창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1조에 의거 평창군발전소주변지역(이하 "발전소주변지역"이라 한다)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창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사업 지원등 특별회계 운용과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소득증대사업과 공공시설사업을 말한다.</p>		<p>제2조(용어의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소득증대사업과 공공시설사업을 말한다. 2. "주민복지지원사업"이라 함은 읍 면 지역에 소재하는 발전소로서 기본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발전소주변지역 및 동일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증대, 주거환경의 개선 기타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용자하는 것으로 한다. 3. "용자금"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거 주민에게 용자하는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을 말한다. 4. 법 제10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4항의 주민복지지원사업 용자대 대상자에 있어서 "1인당"이라 함은 1가 구당 1인을 말한다.

관 계 법 령 발 취 서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법률

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등) 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발전소주변지역개발기본지원사업 : 발전소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공공시설사업 및 육영사업
2. 전기요금보조사업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하여 당해 지역의 전기수용가가 부담하는 전기요금의 일정액을 보조하는 사업
3. 주민복지지원사업 : 발전소주변지역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4. 특별지원사업 : 건설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발전소주변지역 및 당해 시·군 및 자치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5. 기업유치지원사업 : 발전소주변지역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
6. 홍보사업 :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7. 기타 발전소주변지역의 발전과 전원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조사·연구활동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종류별 지원내용·대상지역·시행기간·지원방법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기본지원사업) ① 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주변지역개발 기본지원사업(이하 "기본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세부내용은 별표1과 같다

② 기본지원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 및 당해 발전소주변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이하 "동일행정구역"이라 한다)에 시행한다.

③ 기본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발전소의 건설기간 및 가동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사가 전원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설준비기간에도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④ 기본지원사업중 소득증대사업 및 공공시설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고 육영사업은 공사가 시행한다. 넓면 소득증대사업 및 공공시설사업중 공사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은 이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다.

제21조(주민복지지원사업) ① 주민복지지원사업은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발전소로서 기본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발전소주변지역 및 동일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증대, 주거환경개선 기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하는 것으로 한다.

②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지원기간은 발전소의 건설준비기간부터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지원금은 발전소의 시설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④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혜택이 주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고 실질적인 복지지원이 될 수 있도록 1인당 대출한도액, 대출이자율의 상한선 및 상환기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주민복지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한다.

[별 표 1]

기본지원사업의 세부내용등(제19조제1항관련)

사업 구분	사업 내용	사 업 세 부 내 용
소득 중대 사업	농림수산업 시 설	공동영농 및 영어시설(공동영농기계·공동축산·공동어선을 포함한다)·농기구수리시설·공동양식 및 양어장·생산품공동저장소·공동가공공장·농업용저수지·농로 및 임도·농업용수로·농업용양수장·농작물 및 임산물재배시설등 농림수산업 관련시설
	상 공 업 시 설	공업용수도·직업훈련소·시장·공용창고·구판장·소규모공단등 상공업 관련시설
	관광산업시설	휴게소·휴양소·토산품판매장등 관광산업 관련시설
공공 시설 사업	의 료 시 설	보건진료소등 의료관련시설·주민건강진단등
	사 회 복 지 시 설	노인회관·마을회관·공중목욕탕·가로등·휴게소·어린이놀이터·버스승차대기장등 사회복지 관련시설
	도 로 시 설	소규모도로등 도로관련 시설
	항 만 시 설	소형선박용항만시설 소규모어항·호안옹벽·방파제등 항만관련시설
	상 하 수 도 시 설	상수도시설·하수도시설등 상하수도 관련시설
	교 육 · 문 화 시 설	도서관·유치원·학교통학차·문화시설·향토박물관·사적시설·사회교육시설등 교육·문화 관련시설
	환 경 · 위 생 시 설	쓰레기처리시설·배수구시설·청소차·공중위생시설·환경감사시설 등 환경·위생관련 시설
	방 사 능 감 시 설	방사능감시설비·부민보호조치에 필요한 방호장비 및 시설
	운 동 오 락 시 설	운동장·야영장·운동기구등 운동·오락 관련시설
	전 기 · 통 신 시 설	공용전기시설 및 전화시설·텔레비전방송공동수신시설등 전기·통신 관련시설
육 영 사 업	컴퓨터·피아노등 교육기자재·학자금 및 장학금지급·장학기금적립·각급학교체육활동지원·각종백일장 및 사생대회개최·학교급식 시설지원·각급학교우수학생 표창·주변지역교사연구보조비지급· 영농정보제공 및 교육등 육영사업 관련사업	

※ 비고 : 기본지원사업의 세부내용에는 소득중대사업 및 공공시설사업과 관련한 계획·조사·연구사업 및 시설의 유지·보수·운영을 포함한다.

평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6
----------	----

제안년월일 : 1996. 3. .

발 의 자 : 이경진 의원의
외 6인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95. 7. 1)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중 사망, 장애 또는 상해보상에 대한 보상금액 산출기준이 종전의 의원 「일비」에서 「회의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관련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 규정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보상금액 산출 기준을

「일비」에서 「회의수당」으로 변경함.

(안 제2조제2호, 제4조제1호 및 제2호)

평창군조례 제 호

평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일비"라」를 「"회의수당"이라」로, 「일비를」을 「회의수당을」로 한다.

제4조제1호 및 제2호 본문중 「일비」를 각각 「회의수당」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생략)</p> <p>2. "<u>일비</u>"라 함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u>일비를</u> 말한다.</p> <p>3. -5(생략)</p> <p>제4조(보상금의지급기준)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도의원 당해년도 <u>일비의</u> 2년분 상당액</p> <p>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도의원 당해년도 <u>일비의</u> 1년분 상당액에 다음 각목의 등급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p> <p>가. -하(생략)</p> <p>3. (생략)</p>	<p>제2조(정의)</p> <p>.....</p> <p>1. (현행과 같음)</p> <p>2. "<u>회의수당</u>"이라</p> <p>.....<u>회의수당</u>.....</p> <p>3. -5(현행과 같음)</p> <p>제4조(보상금의지급기준)</p> <p>.....</p> <p>1.</p> <p>.....<u>회의수당</u>.....</p> <p>2.</p> <p>..... <u>회의수당</u></p> <p>.....</p> <p>가. -하(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관 계 법 령 발 취 서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①법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4, 회의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5,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6 및 별표 7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회의수당은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95. 7. 1]

[별표 5] <신설 95. 7. 1>

지방의회의원 회의수당 지급범위(제15조관련)

구 분	회의수당 지급범위
시·도의회의원	일 60,000원 이내
시·군·자치구의회의원	일 50,000원 이내

제15조의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①법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95. 7. 1>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시·도의회 의원 회의수당의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시·도의회의원 회의수당의 1년분 상당액.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평창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1
----------	----

제출년월일 : 1996. 3.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제안이유

현행 주민등록사무중 "주민등록의 열람및 등·초본 교부" 사항은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던것을, 앞으로는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군에서도 처리할수 있도록하여 민원편의를 확대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을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하는 경우 군수 또는 읍·면장이 처리할수 있도록 함(안 제2조)

개정근거 법령

주민등록법 제18조 제1항및 제45조의3

평창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산조직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교부하는 경우 군수 또는 읍·면장이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p> <p><u>< 신 설 ></u></p> <p>1. ~ 4. (생략)</p>			<p>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 ----- ----- -----</p> <p><u>다만, 전산조직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교부하는 경우 군수 또는 읍·면장이 처리할 수 있다.</u></p> <p>1. ~ 4. (현행과 같음)</p>

관계 법령 발췌서

주민등록법

제18조 제1항(열람또는 등·초본의 교부)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초본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첨부하여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할수 있다.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5조3

(거주지 외의 주민등록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산조직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45조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 구역외의 거주자에게도 주민등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교부할수 있다.

평창군 관내전화 통화권 확대에 관한

건의문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정보·통신 문화에 일익하고 계시는
귀 기관에 감사 드립니다.

우리 평창군은 행정구역상 크게 북부권(봉평면, 용평면, 진부면,
도암면)과 남부권(평창읍, 미탄면, 방림면, 대화면)으로 구분되어
있고 지리적으로는 강원남부 내륙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북부권의 생활권은 강릉시에 속해 있는 반면에
남부권의 생활권은 원주권으로 불과 한시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주민의 문화, 경제, 사회등 모든 생활권이 원주권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한국통신사업본부의 현재 평창군 관내 통화권은 지리상
평창군과 인접해 있는 홍천, 횡성, 영월, 정선, 강릉, 제천등으로
국한되어 있어 군민의 일상생활에 통신사용이 가계에 크게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충북 제천시와는 인접과 관계없이 타도 인데도 관내 통화권
으로 된 점을 고려할 때 평창군의 생활권이 현실적으로 원주권에
속해 있음을 감안 평창군의 관내 통화권을 원주지역까지 확대
시켜 주실것을 건의 드리오니

귀 기관의 적극적인 배려로 저희 군민의 불편이 하루속히 해소
될 수 있도록 배전의 선처를 바랍니다.

1996. 3.

평창군의회의원일동

진정서 처리 결과

진 명	농어촌버스 비수의 노선 운행에 따른 결손액 지원 요청		진정 번호	제96-2.3호
진 정 인	주 소	평창군 평창읍 하리 외		
	성 명	평창운수(주) 강원여객(주) 대표 김진한		
접 수 년 월 일	1996. 2. 1.			
이송회부년월일	1996. 2. 6.			
검 토 년 월 일	1996. 2. 1. ~ 2. 5.		전문위원	
통 지 년 월 일	1996. 2. 6.			
<p><u>진정요지</u></p> <p>1. 이유 및 경과</p> <p>평창운수(주)와 강원여객(주)에서는 관내 대중교통수단인 농어촌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나, '94, '95년도 운행에 따른 결손으로 막대한 경영적자가 발생하여 공영버스 노선 운행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의 보전 대책을 건의함.</p> <p>가. 운행노선 <input type="checkbox"/> 강원여객(주) : 18개노선/차량6대 <input type="checkbox"/> 평창운수(주) : 31개노선/차량12대</p> <p>나. '95경영적자 <input type="checkbox"/> 강원여객(주) : 78,840천원 <input type="checkbox"/> 평창운수(주) : 39,120천원</p> <p>2. 요구사항</p> <p>가. 기존 보상을 받고있는 벽지노선에 대한 현실성 있는 보조적용</p> <p>1) 현행 보조금액 <input type="checkbox"/> 강원여객(주) : 년 1,800만원/1일평균 49천원 /차량1대당8천원 <input type="checkbox"/> 평창운수(주) : 년 800만원/1일평균22천원/차량1대당 2천원</p> <p>2) 보상근거 : 육운진흥법 제5조, 동시행령 제6조, 동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p> <p>나. 벽지노선의 모든 비수의노선에 대한 「농어촌비수의노선 운행 결손액 보조금 지원」을 확대 실시 요구</p>				
<p><u>처리결과</u></p> <p>- '96. 2. 6 평창군으로 이첩 및 의정활동을 통하여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는 내용을 진정진에게 회신</p>				

평창운수주식회사

평 운 : 계 9 호

1996. 2. 1

수 신 : 평 창 군 의 회 의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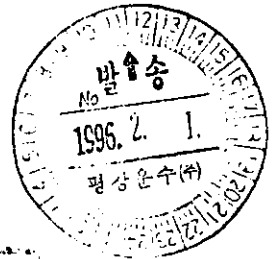
참 조 : 사 무 과 장

제 목 :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결손액 보조 지원 요청 건의

1. 귀군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해마다 늘어나는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의 경영 적자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당사에서 귀군의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운행결손액 보조금 지원」을 붙임과 같이 건의 요청하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 붙 임 : 건의서 1부. " 끝 "



선 결 의 장	<i>[Handwritten Signature]</i>	결 제 (공관인)	부 의 장	
접수일시	1996. 2. 1. 지	번호	과 장	<i>[Handwritten Signature]</i>
처리부서	평창군의회	비수익노선	계 장	<i>[Handwritten Signature]</i>

사무처:

평 창 운 수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김 진 현



建 議 書

□ 恒常 郡民의 福祉向上과 住民便宜 增進에 獻身的으로 努力하시는 郡守님과 郡議會 議長님께 衷心으로 感謝드립니다.

□ 當社は 貴郡 管内에 農漁村버스 車輛 12臺와 31個 路線을 各各 認可 받아 現在까지 대부분 僻地, 奧地 마을을 運行하고 있는 實情이나 每年 自家用 車輛의 增加에 따른 大衆交通 利用客 減少와 離農現狀에 따른 農村人口의 減少로 經營環境은 至極히 어려운데 비해 人件費 上昇 및 車輛 高級化에 따른 資金 負擔, 諸般 驅動經費(경유비, 계유비, 타이어튜브비, 부품비 등)의 單價 上昇으로 因하여 會社は 점점더 經營壓迫에 처하게 되었으나 오로지 料金(運賃)引上에만 依存해 好轉 되기를 期待할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 또한 政府에서 一律적으로 市場經濟의 影響 및 物價 上昇 등을 考慮하여 實際 原價 上昇의 折半에도 못미치는 料金 引上이 이루어져 惡化一路의 經營現實은 明若觀火한 事實인 것입니다.

더욱이 今年부터는 老人에게 支給되던 敬老優待券이 現金으로 代替되면서 實際 利用客이 激減하면서 점점더 經營 惡化를 招來하고 있는 現實입니다. 이러한에도 不拘하고 當社は 大衆交通 本然의 任務를 完遂하며 現在까지도 無斷缺行하거나 減回運行없이 忠實하게 運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4年의 29,770천원 缺損 發生에 이어 지난 '95年 한해에도 略 39,120천원의 經營 赤字를 보았습니다. 貴郡 管内 農漁村버스 12 臺는 3 個의 僻地버스 路線과 8 個의 指定 非受益路線의 運行 그리고 餘他 非受益性 路線 14 個 등 31 個의 認可받은 全體 運行系統 가운데 略 80 % 以上이 缺損 路線으로 運行되고 있는 實情입니다. 이中 補償받는 路線은 僻地路線으로 開設命令 路線分으로 이는 江原道에서 별도의 損失補償金으로 지난('95) 한해동안 略 8,000천원의 金額을 補償 名目의 補助가 있었으나 이는 하루 平均 略 22천원, 車輛 1臺當 2 千원으로 이와같이 至極히 現實性없는 補償으론 해마다 늘어나는 赤字를 保填할 方法이 遙遠하다고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當社の 지난해('95年)貴郡 管内에서의 運送輸入 實績은 612,041천원(1日平均 臺當 140천원)으로 극히 低調한 實績으로 이는 貴郡 損益分岐點(BEP)賣出 651,170천원(1日平均 臺當 149천원)에 39,120천원(1日平均 臺當 9천원)의 赤字運營을 甘受하며 運行하고 있는 實情이어서 當社에서는 다른 現實的인 自救策을 講求하던 中,

- 이와 類似한 環境의 餘他 市,郡에서 '96년부터는 追加 更正 豫算에 補助金を 策定하여 管内의 어려운 農漁村버스運送事業者의 經營赤字 保填策으로 地方自治 團體에서 僻地路線으로 開設된 路線 外-非受益路線에 대하여 「農漁村버스 非受益路線 運行 缺損額 補助金 支援計劃」을 自體 樹立하여 施行하고 있으므로 貴郡에서도 보다 나은 住民生活 環境과 地域民의 交通 便宜를 위한 安定된 大衆交通 確保를 위하여 農漁村버스 運送事業者의 經營赤字 保填策으로 地方自治 團體에서 誠意를 갖고 支援하여 주실 것을 懇曲히 建議드리며 多小의 支援이라도 業體의 어려운 經營與件에 도움이 될것으로 確信합니다. 아울러 當社에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貴郡 管内 全 路線을 無斷缺行이나 減回運行없이 忠實히 運行할것이며 또한 運行秩序를 지키고 서비스 改善에 最善을 다할것을 덧붙여 約束드리며 올해부터는 반드시 「非受益路線 運行缺損額 補助金 支援」이 이루어 지도록 積極的인 協助를 바랍니다.
- 끝으로 恒常 運輸行政에 熱과 誠을 다해 努力하시는 郡守님과 以下 運輸行政의 關係 公務員 여러분과 郡議會 議長님과 議員님 한분 한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感謝를 드립니다.

1996 年 2 月

平昌運輸株式會社
代表理事 金振漢

강원여객자동차주식회사

우 210-010 강원도 강릉시 홍계동 992-1 / 전화 (0391) 43-3885 전송 (0391) 43-1604 담당 장수호

강 여 영 : 제 113 호

1996. 2. 1

수 신 : 평 창 군 의 회 의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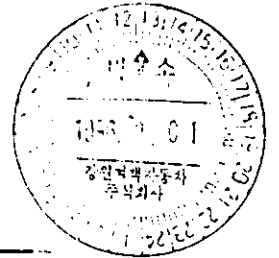
참 조 : 사 무 과 장

제 목 :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결손액 보조 지원 요청 건의

1. 귀군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해마다 늘어나는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의 경영 적자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당사에서 귀군의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운행결손액 보조금 지원」을 붙임과 같이 건의 요청하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 붙 임 : 건의서 1부. " 끝 "



선 결	기장		결 사 (공란)	부의장	
접수일시	1996. 2. 1	번호 113	파 장		
처리부서	평창군의회	비서실	서 장		

인명지킴:

강원여객자동차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진 환



建 議 書

□ 恒常 郡民의 福祉向上과 住民便宜 增進에 獻身의으로 努力하시는 郡守님과 郡議會 議長님께 衷心으로 感謝드립니다.

□ 當社는 貴郡 管內에 農漁村버스 車輛 6 臺와 18個 路線을 各各 認可 받아 現在까지 대부분 僻地, 奧地 마을을 運行하고 있는 實情이나 每年 自家用 車輛의 增加에 따른 大衆交通 利用客 減少와 離農現狀에 따른 農村人口의 減少로 經營環境은 至極히 어려운데 비해 人件費 上昇 및 車輛 高級化에 따른 資金 負擔, 諸般 驅動經費(경유비, 계유비, 타이어트류브비, 부품비 등)의 單價 上昇으로 因하여 會社는 점점 더 經營壓迫에 처하게 되었으나 오로지 料金(運賃)引上에만 依存해 好轉 되기를 期待할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 또한 政府에서 一律的으로 市場經濟의 影響 및 物價 上昇 등을 考慮하여 實際 原價 上昇의 折半 에도 못미치는 料金 引上이 이루어져 惡化一路의 經營現實은 明若觀火한 事實인 것입니다.

더욱이 今年부터는 老人에게 支給되던 敬老優待券이 現金으로 代替되면서 實際 利用客이 激減하면서 점점 더 經營 惡化를 招來하고 있는 現實입니다. 이러한에도 不拘하고 當社는 大衆交通 本然의 任務를 完遂하며 現在까지도 無斷缺行하거나 減回運行없이 忠實하게 運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4年의 60,220천원 缺損 發生에 이어 지난 '95年 한해에도 略 78,840천원의 經營 赤字를 보았습니다. 貴郡 管內 農漁村버스 6 臺는 7 個의 僻地버스 路線과 2 個의 指定 非受益路線의 運行 그리고 餘他 非受益性 路線 6 個 등 18 個의 認可받은 全體 運行系統 가운데 略 80 % 以上の 缺損 路線으로 運行되고 있는 實情입니다. 이中 補償받는 路線은 僻地路線으로 開設命令 路線分으로 이는 江原道에서 별도의 損失補償金으로 지난('95) 한해동안 略 18,000천원의 金額을 補償 名目的 補助가 있었으나 이는 하루 平均 略 49천원, 車輛 1臺當 8 千원으로 이와같이 至極히 現實性없는 補償은 해마다 늘어나는 赤字를 保填할 方法이 遙遠하다고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當社の 지난해('95年)貴郡 管内에서의 運送輸入 實績은 311,634천원(1日平均 臺當 142천원)으로 극히 低調한 實績으로 이는 貴郡 損益分岐點(BEP)賣出 390,474천원(1日平均 臺當 178천원)에 78,840천원(1日平均 臺當 36천원)의 赤字運營을 甘受하며 運行하고 있는 實情이어서 當社에서는 다른 現實的인 自救策을 講求하던 中,

□ 이와 類似한 環境의 餘他 市,郡에서 '96년부터는 追加 更正 豫算에 補助金을 策定하여 管内의 어려운 農漁村버스運送事業者의 經營赤字 保填策으로 地方自治 團體에서 僻地路線으로 開設된 路線 外 非受益路線에 대하여 「農漁村버스 非受益路線 運行 缺損額 補助金 支援計劃」을 自體 樹立하여 施行하고 있으므로 貴郡에서도 보다 나은 住民生活 環境과 地域民의 交通 便宜를 위한 安定된 大衆交通 確保를 위하여 農漁村버스 運送事業者의 經營赤字 保填策으로 地方自治 團體에서 誠意를 갖고 支援하여 주실 것을 懇曲히 建議드리며 多小의 支援이라도 業體의 어려운 經營與件에 도움이 될것으로 確信합니다. 아울러 當社에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貴郡 管内 全 路線을 無斷缺行이나 減回運行없이 忠實히 運行할것이며 또한 運行秩序를 지키고 서비스 改善에 最善을 다할것을 덧붙여 約束드리며 올해부터는 반드시 「非受益路線 運行缺損額 補助金 支援」이 이루어 지도록 積極的인 協助를 바랍니다.

□ 끝으로 恒常 運輸行政에 熱과 誠을 다해 努力하시는 郡守님과 以下 運輸行政의 關係 公務員 여러분과 郡議會 議長님과 議員님 한분 한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感謝를 드립니다.

1996 年 2 月

江原旅客自動車株式會社
代表理事 金 振 漢

진정서 처리 결과

건 명	마을안길 농로 및 도수로 확포장		진정 번호	제96-4호
진 정 인	주 소	평창군 평창읍 여만리		
	성 명	엄 노 섭 외 35인		
접 수 년 월 일	1996. 2. 9.			
이송희부년월일	1996. 2. 22.			
검 토 년 월 일	1996. 2. 9. ~ 2. 21.		전문위원	
통 지 년 월 일	1996. 4. 4.			
<p><u>진정요지</u></p> <p>1. 이유 및 경과</p> <p>가. 상수도 배관공사시 마을안길 포장도로 중앙부를 관통하여 배관을 설치하므로 → 도로가 도수로 쪽으로 기울어져 보행, 우마차 통행등에 위험</p> <p>나. '94 ~ '95년 반상회 건의사업으로 건의한바 있음.</p> <p>2. 요구사항</p> <p>마을농로 500m 포장, 도수로 350m 옹벽설치 요망</p>				
<p><u>처리결과</u></p> <p>- '96. 2. 22 평창군으로 이첩 및 의정활동을 통해 원만히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진정인에게 회신</p> <p>- '96. 4. 4 평창군수로부터 현 마을안길은 농어촌도로 정비 계획상 '97년이후 노선별 정비계획에 의거 확포장할 계획이며 진입도로중 통행에 불편을 주는 구간 에 대해서는 현지 검토후 보수비를 예산에 반영 처리하겠다는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지 하였다는 회신을 받음.</p>				

선 결 의 장	무주장
접수일시 1996. 2. 9	과 각
처리부서	계 각

No. 4호

진 정 서

평창군 평창읍 여백리

진정사건 마을안길 도로로

사업 불양 마을안길 도로로 35m 마을안길 50m
 계획정내용 수 부락에 상수도 배관 시설을 당시
 마을안길 포장도로 포장사업을 관통하여
 배관설치 할 계획으로 도로가 도로로 주으로 기
 우러져 보행하는 물론 배관설치도 통행하는데
 불편하여 특히 초중고 학생의 통행 불편을
 우려하여 통행 하는데 항시 위험하여
 1. 배관설치는 항시 마을안길로 하고 있는 바
 해당 도로 포장에 시급하여 도로로 도로
 로의 부락 되어 있어 도로로 같이 약 1.5m
 이하에 도로로 용변 설치를 하여야 도로의
 수명이 오래 가겠으며 부락의 길으로는
 불가능하여 정책수업으로 준비부족을
 진정함에서 위 부락에서 1994년도 및 1995
 년도 원 일 반향리 반건의 사업으로 도로 약
 500m 마을안길 35m 을 수하의 걸 건의 하였으
 나 최신 설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번도
 다시 진정서를 통하여 청취 하여 주시기 바
 람이다

진정서 처리 결과

건 명	마을농로 확.포장	진정 번호	제96-5호
진 정 인	주 소	평창군 평창읍 중1리	
	성 명	김봉태 외 138인	
접 수 년 월 일	1996. 2. 13.		
이송회부년월일	1996. 2. 22.		
검 토 년 월 일	1996. 2. 13. ~ 2. 21.		전문위원
통 지 년 월 일	1996. 4. 4 .		
<p><u>진정요지</u></p> <p>1. 이유 및 경과</p> <p>가. 평창고등학교에서 노람뜰과 공동묘지에 이르는 농로로써, 인근 주변에 21ha 농경지를 120여 농가가 경작하고 있으나 농로의 폭이 협소하고 농로가 진흙인 관계로 해빙과 우천시 차량 및 농기계 통행이 불가능하여 영농자재 운반 및 농산물 반출에 막대한 지장 초래</p> <p>나. 공동묘지가 인접하고 있어 상가 발생, 성묘동시 농작물 피해로 인한 보상시비 다발</p> <p>2. 요구사항</p> <p>위의 농로 조기 확.포장을 건의함.</p> <p>→ 편입부지는 조건없이 회사할 것임.</p>			
<p><u>처리결과</u></p> <p>- '96. 2. 22 평창군으로 이첩 및 의정활동을 통해 원만히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는 내용을 진정인에게 회신</p> <p>- '96. 4. 4 평창군수로부터 현 마을농로 확.포장에 대하여 군에서는 계획이 없으므로 평창읍장에게 소규모 주민생활 편의사업비에서 우선 시급한 부분부터 해결 하도록 통보 하였다는 회신을 받음.</p>			

건의 의 서

항상 군민의 복지 향상과 군정 수행에 수고가 많으신 군수님과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저희 마을의 오랜 숙원사업을 건의코자 하오니 빠른 시일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마을은 읍 소재지에 위치하며, 농촌지역과 도시형이 복합된 마을로서 특히나 농로개설등 농촌지역 개발사업이 소외되어 있습니다.

금번 건의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안은 평창고등학교에서 노람뜰과 공동묘지에 이르는 농로로서, 인근 주변에 21 ha 농경지를 120여 농가가 경작하고 있으나 농로 폭이 협소하고 농로가 진흙인 관계로 해빙과 우천시 차량 및 농기계 통행이 불가능하여 영농자재 운반 및 생산된 농산물 운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농산물 제값 받기에도 많은 지장을 받고있습니다.

더욱이 공동묘지가 인접하고있는 대로임으로 상가 발생이나 성묘시에는 중장비와 인파로 인하여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 시비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로에 접하는 지주들이 편입부지를 조건없이 회사하고, 농로포장을 해 줄것을 수차 건의 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 조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마을 주민 연명으로 본 건의서를 제출하오니 책무에 바쁘시리라 사료되오나 저희 마을의 숙원 사업을 깊이 헤아리어 조속히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 2.

평창읍 중1리 리 장 **김봉희**

새마을지도자 **김영진**

개발위원 **김광철**

신 결 의 장	김봉희	김영진	김광철	부리장	
접수일시	91.6.2.12	73		의 장	김광철
처리부서	군의회			계 장	김광철

김문익

진정서 처리 결과

진 명	건축사 업무협조	진정 번호	제96-6호
진 정 인	주 소		
	성 명	대한건축사협회 강원도 건축사회	
접 수 년 월 일	1996. 2. 21.		
이송회부년월일	1996. 2. 22.		
검 토 년 월 일	1996. 2. 21. ~ 2. 22		전문위원
통 지 년 월 일	1996. 2. 29.		
<p><u>진정요지</u></p> <p>1. 이유 및 경과</p> <p>가. 건축물의 규모에 비하여 촉박한 납품기한과 제한된 적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설계도서를 작성 → 정상설계 불가능으로 부실공사 발생의 최초의 근원제공 요인</p> <p>나. 용역업무의 입찰공고 또는현상공모로 도민의 자립기반 자금이 타시도로 유출됨.</p> <p>다. 공공기관 발주의 설계 및 공사감리에 대한 용역금액이 건축사 업무 및 보수기준에 크게 미달됨.</p> <p>2. 요구사항</p> <p>가. 충분한 납품기일 보장 및 공사비 내역에 정상적인 예산을 확보하여 양질의 건물 건축도모</p> <p>나. 용역업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업체보조 육성차원에서 예산회계법의 근거 아래 강원도내 건축사사무소로 제한을 확대요구</p> <p>다. 공공기관 발주 설계 및 공사감리에 대한 용역비 적정유지</p>			
<p><u>처리결과</u></p> <p>- '96. 2. 22 평창군으로 이첩 및 의정활동에 참고 하겠다는 내용을 진정인에게 회신</p> <p>- '96. 3. 29 평창군수로부터 '95 하반기부터 용역비의 단가를 현실성있게 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도내 제한입찰 가능사업에 대하여는 관려규정을 적용 실시하고 있다는 회신을 받음.</p>			

「 성실시공 생활화로 공사론은 나라론은 」

대한건축사협회 강원도건축사회

우) 200-010 춘천시 옥천동 39-5 ☎ (0361) 54-2442 FAX (0361) 55-2083

문서번호 건사협 강원 223-80
 시행일자 1996. 2. 16.
 수신 각시.군의회 의장
 참조 건설담당전문위원
 제목 건의서 제출

선 결 의 장	[Handwritten Signature]		결재 (공란)	부의장	
접수일시	1996. 2. 16.	번호 86		과장	
처리부서	평안군의회	[Handwritten Stamp]		계장	[Handwritten Stamp]

전송키: [Handwritten]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자립기반 구축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많으신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경기 불황으로 도내 건축물량이 극히 감소하는 추세로 건축사 사무소에서 업무 수행과 운영에 따른 어려움이 많아 다음 사항을 건의 드리오니 동 건의 내용을 수용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다 음

1. 건축물의 규모에 비하여 촉박한 납품기한과 제한된 적은예산의 범위내에서 설계도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 정상적인 설계도서 작성이 불가능하며 제반사항을 축소 짜 맞추기로 업무가 추진되어 예술적인 설계와 견실한 시공을 기대할수 없어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최초의 근원이라 할수 있음으로 충분한 납품기일로 정상적인 설계도서를 작성케하고 공사비 내역서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여 양질의 건축물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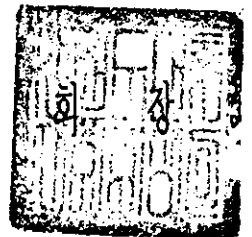
2. 용역 업무는 예산 회계법에 수의 계약으로도 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사정에 의하여 입찰공고 또는 현상공모를 할 경우 예정 금액에 따라 참가 자격을 제한 하지 아니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사료 되오나 도민의 피담어린 세금으로 모아진 자립기반 자금이 타시.도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 업체 보호 육성 차원에서 강원도내 건축사사무소로 제한 하여 주시고

3. 최근 각급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설계 및 공사감리에 대한 용역금액이 건축사 업무 및 보수기준에 크게 미달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적정한 설계 및 공사 감리비가 지급 될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 기본 업무 인.월수표 1부.

2. 1996년도 건축사 및 건축사보 직접인건비 기준 1부. 끝.

대한건축사협회 강원도건축사회



「 성실시공 생활화로 공사든든 나라든든 」

대한건축사협회 강원도건축사회

우) 200-010 춘천시 옥천동 39-5 ☎ (0361) 54-2442 FAX (0361) 55-2083

문서번호 전사협 강원 325-24

시행일자 1996. 1. 10.

수 신 수신처 참조

제 목 건축사 및 건축사보 직접인건비 기준 변경 통보

1. 본협 기술 325-24(96. 1. 10)호의 관련입니다.

2.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 제26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및 건축사보의 직접인건비 기준이 '96년도 제1회 이사회('96. 1. 10)에서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 되었기 이를 통보하며

3. 동 기준은 1996. 1. 11부터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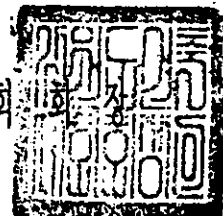
* 직접 인건비

단위 : 원

구 분	직접인건비	학 력 및 경 력 의 기 준			비 고
		학 사	전 문 대 졸	공 고 졸	
건 축 사	129,809	-	-	-	
건축사보(고급)	94,007	10년 이상	12년 이상	14년 이상	
건축사보(중급)	76,473	5년 이상 10년 미만	7년 이상 12년 미만	9년 이상 14년 미만	
건축사보(초급)	55,983	5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9년 미만	
보 조 원	54,923		5년 미만	7년 미만	

끝.

대한건축사협회 강원도건축사회



수신처 : 각 회원, 시,군청, 시,군교육청.

진정서 처리 결과

건 명	고길천 소교량 설치	진정 번호	제96-7호
진 정 인	주 소	평창군 평창읍 상리	
	성 명	이만호 외 53명	
접 수 년 월 일	1996. 2. 28.		
이송회부년월일	1996. 3. 16.		
검 토 년 월 일	1996. 3. 28. ~ 3. 15		전문위원
통 지 년 월 일	1996. 3. 16.		
<p><u>진정요지</u></p> <p>1. 이유 및 경과</p> <p>가. 가구 및 인구 : 70가구 / 250명</p> <p>나. 위 치 : 상리 1반 지역</p> <p>다. 이유 및 경과 : 상리 1반지역은 동부지역 5개 마을물이 합한 고길천이 흐르고 있음에도 1반 지역 건너편 농경지를 통행할 수 있는 교량이 없는 관계로 집중 호우시 농작물 반출 및 경작이 불가능 함.</p> <p>2. 요구사항</p> <p>상리 1반 지역에 소교량 가설 요구</p> <p style="padding-left: 40px;">〈 위치도 〉 — 불임.</p>			
<p><u>처리결과</u></p> <p>- '96. 3. 16 평창군으로 이첩 및 의정활동을 통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는 내용을 진정인에게 회신</p>			

고길천 소교량 설치 건의서

평창군의회 제정

평소 군민의 생활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평창읍 상리는 평창강을 경계로 읍 소재지와 접해있는 마을로서 70여호 250 여명의 주민이 주로 농업에 종사하며 살아가고 있으나 대다수 영세농으로 읍내에서도 빈촌이라 할 수 없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마을 한가운데를 동부지역의 5개 마을물이 합한 고길천이 흐르고있으나, 상리 1반 지역에 교량이 없는 관계로 집중호우나 장마시기에는 하천물이 급격히 증가하여 건너편 농경지엔 왕래조차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18 가구 10 ha 경작)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농작물의 병충해 방제가 시급한 장마철에는 적기에 병충해를 방제 할 수 없는 관계로 채산성이 있는 고소득 작물을 전혀 재배 할 수 없습니다.

뿐만아니라 실사 생산한 농산물이라 할 지라도 적기 출하가 불편하여 제 가격을 받을 수 없는 매우 딱한 실정입니다.

그렇잖아도 어려운 농촌 실정을 감안하시어 의장님께서 하루라도 빨리 이곳에 소교량을 설치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상리 전주민의 이름으로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끝으로 의장님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옵길 비오며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1996. 2.

선 결	의 장		결재	부위장	
집수일시	1996. 2. 16	번호 99	(공란)	과장	
처리부서	민선부	연장		계장	

전문의료:

상 리 장 이 만 호
 새마을지도자 김 진 용
 부녀지도자 최 친 옥
 개발위원
 " "
 " "



진정서 처리 결과

진 명	오대천 하천부지에 전문대 및 공설운동장 조성		진정 번호	제96-8호
진 정 인	주 소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8리		
	성 명	곽 문 춘 외 19인		
접 수 년 월 일	1996. 3 . 4 .			
이송회부년월일	1996. 3 . 16.			
검 토 년 월 일	1996. 3 . 4 . ~ 3. 15.		전문위원	
통 지 년 월 일	1996. 3 . 16.			
<p><u>진정요지</u></p> <p>1. 이유 및 경과</p> <p>가.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진부면 하진부7리 오대천(진부고수부지 하류쪽) ○ 면적 : 3만평(개간농지) <p>나. 이유 및 경과</p> <p>위의 하천부지는 60여년전부터 영세농민들이 개간을 하여 지금까지 경작을 하고 있는 토지로써 실 경작 농민과 일연의 대화도 없이 전문대학 및 공설운동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에 대하여 충분한 여론을 수렴한 후 시행할것을 요구함.</p> <p>2. 요구사항</p> <p>가. 개간지 불하요구 → 완전 하천 정비시</p> <p>나. 개간지 면적 실측량 → 개간지에 대한 보상 실시</p> <p>다.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요구 (5년으로)</p> <p>〈 위치도 〉 —— 불임.</p>				
<p><u>처리결과</u></p> <p>- '96. 3. 16 평창군으로 이첩 및 의정활동을 통하여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는 내용을 진정인에게 회신</p>				

최수현 의장님

진정서

평창군 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평창군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이 진정서를 올리게 된 동기는

진부면 하진부 1리 지역의 오대천 증용하천 약 3만평을 전문대학교
공설운동장으로 조성한다는 계획 때문입니다.

오대천 증용하천은 지금으로부터 약 60여년전 병자년 수해로 인하여
만들어진 하천으로서 진부면 영세농민들이 개간을하여 지금까지 경작을
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물론 '96년도 오대천 증용하천 정비계획을 수립된지 알고 있습니다만

60여년동안 개간을하고 경작하고 있는 실농민과는 일언의 대화도 없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너무나 밀방적인 처사라 생각합니다.

사실 이미 조성되어 있는 고수부지 5,000평도 아직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인데 앞으로 약 3만평을 더 고수부지로 조성한다는 것은 하천을 경작하고 있는
저희들 뿐만아니라 면민들도 의아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일부의 시선은 혹시 골채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어
충분한 여론 수렴을 하셔서 어렵게 경작하고 있는 농민들을 도와주십시오.

경작자들의 요구사항은 아래 3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 완전한 하천 정비가 된다면 다시금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불하하여 주십시오.

둘째 : 지금까지 경작하고 있는 면적을 실측량하여 개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하여
주십시오.

셋째 : 하천 전용허가 기간이 5년임으로 앞으로 5년 동안의 기간을 주십시오.

이상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어떠한 희생도 각오할 생각입니다.

평창군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평창군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진정서 처리 결과

건 명	운교1리 간이상수도 집수장 재설치		진정 번호	제96-9호
진 정 인	주 소	평창군 방림면 운교1리		
	성 명	김 만 수 외 37		
접 수 년 월 일	1996. 3. 5.			
이송회부년월일	1996. 3. 16.			
검 토 년 월 일	1996. 3. 5. ~ 3. 15.		전문위원	
통 지 년 월 일	1996. 3. 16.			
<u>진정요지</u>				
1. 이유 및 경과				
가. 간이상수도 시설 현황				
○ 위 치 : 방림면 운교1리 1반 밤나무골				
○ 설치연도 : 1992년 10월				
○ 사 업 비 : 4,600만원				
○ 시공업체 : 평창상수도 공무소 채광사 (대표 문성수)				
나. 이유 및 경과				
전반적인 부실시공으로 누수가 계속되고 배관의 결빙으로 인한 식수 부족으로 제한급수를 하고 있으며 고지대는 방림면 의용소방대 소방차로 급수를 하는 실정임.				
2. 요구사항				
가. 집수장 이전 재신설				
○ 위 치 : 방림면 운교1리 1반내 배나무골				
○ 수혜가구 : 60가구				
〈 위치도 〉 — 불임.				
<u>처리결과</u>				
- '96. 3. 16 평창군으로 이동 및 의정활동을 통하여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진정인에게 회신				

진 정 서

수신: 평창 군수님 .평창군의회 의장님

참조: 건설과장님

불철주야 군정에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 군의회 의장님, 건설과장님 건투를 비읍니다.

***.진정 내용:**

방림민 운교 1리 간이 상수도 문제입니다. 당리는 1992년 10월에 공사비 4600만원에 설계되어 평창수도 공무소 চে광사 대표 문정수가 하청을 받아 시공 하였습니다.

완공 다음해 가을 집수장 밑부분이 부실공사로 구멍이 나 시공자가 1차 보수를 하였으나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제를 정품을 사용해야 함에도 당리에 거주하는 석봉길집에서 5만원 상당의 불량자제를 사용 배관 파열로 누수가 발생, 가 체보수를 하였으나 누수지역이 발생합니다. 당리 하천에 배관 횡단지역이 깊이가 맞지 않아 동파가 우려 되며 현재 배관이 결빙되어 당리주민의 식수가 부족 제한 급수를 하며 고지대 주민은 식수 해결에 어려움이 있어 방림의용대 소방차로 급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바 당리주민 60가구의 숙원이 배나무골에 물량이 현재집수장 보다 많은곳이 있어 집수장 재신설을 전주민이 진정하는 바오니 군수님,군의회 의장님,건설과장님께서 꼭 배려하여 주시기를 전주민이 원하는바 이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선 결	이성	김민수	결 지	부기명	
접수일시	1996.3.5 시 분	번호 115	(공란)	과장	김민수
처리부서	평창군의회	김민수		과장	김민수

1996년 2월 29일

평창군 방림민 운교 1리 주민 일동 김민수

주민 대표 : 김 민 수

第 39 回 平昌郡議會 臨時會
불법건축물처리진상과악특위

提 出 書 類

平 昌 郡

목 록

< 문종옥 소유 식당관련 : 고래벳속 식당 >

1. 건물증축 현황 (도면 및 건축물 대장) ————— 282
2. 불법건물 증축 경위 및 처리사항 ————— 286
3. 식품접객업 허가 경위 ————— 293

< 광희중 소유 축사시설 관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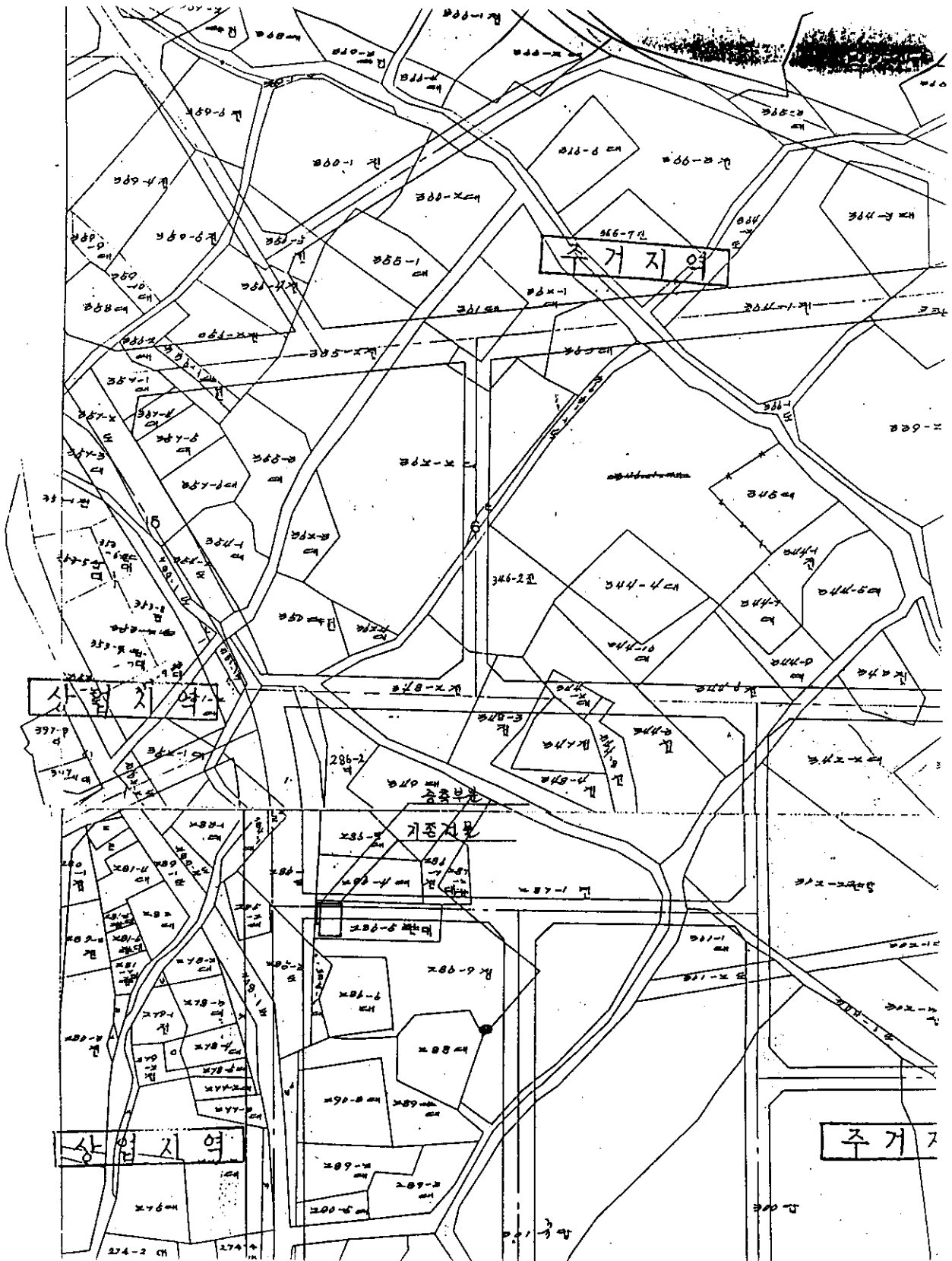
4. 축사건축현황 (도면 및 건축물 대장) ————— 307
5. 사업추진 경위 및 추진현황 ————— 312
6. 하천무단점용 경위 및 처리상황 ————— 332
7. 관계기관 고발 현황 ————— 350
8. 감사결과 ————— 360

< 기 타 >

9. 민원발생 현황————— 368
10. 언론보도사항 ————— 372

< 문종옥 소유 식당관련 : 고래뱃속 >

1. 건물 증축현황 (도면 및 건축물 대장)



작성자서명인인 박 승 인
 납세시유분납인

건축물대장

가옥번호 103-1 연락번호

건축물의소재지 평창군 봉평면 장동 리 286-5 번지 카호

1955

건축허가일년월일 허가번호 제 호 준공검사일년월일

구 조	증별	구분	건축물면적					변동사항	이동사유 이동년월일	소유자 주소 성명	처리 년월일	기록자 인
			지하	1층	2층	3층	4층					
옥 조 시멘트외벽	용도	주택		주택					최희만, 박희만 부리소영전	평창군 봉평면 최상리	88.1.10	최상리
	면적	34의		34의					88.1.10	평창군 봉평면 최상리		최상리
"	용도	주택		주택					최상리, 최희만 부리소영전	평창군 봉평면 최상리		최상리
	면적	34의		34의					88.1.10	평창군 봉평면 최상리		최상리
옥 조 시멘트외벽	용도	대중 용숙점		대중 용숙점					최희만, 최희만 부리소영전	"		최희만
	면적	34의		34의					"	"		최희만
	용도											
	면적											
	용도											


위 건축물대장은 원본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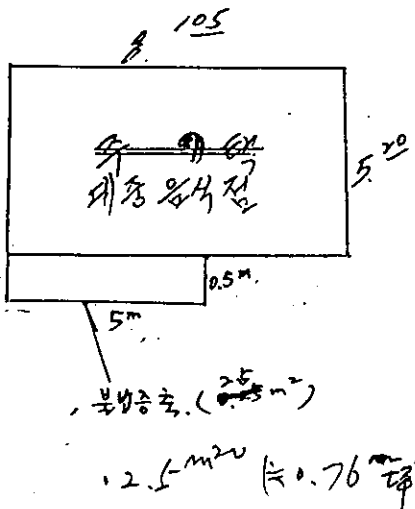
1996. 3. 12

평창군 봉평면



평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 제1항
 2호의 규정에의거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함

작성자  검사자

건 물 실 측 도	면 적 산 출	변동상황	이동사유	소 유 자		처 리 년월일	기록자 확 인	
			이동년월일	주 소	성 명			
 <p>10.5</p> <p>5.20</p> <p>0.5m</p> <p>5m</p> <p>주거용 2층 주택</p> <p>부속공간 (2.5m²)</p> <p>1.25m² (= 0.76m²)</p>	<p>주거용 2층 주택</p> <p>$9. \frac{10.5}{x} \times 5.20 = 44.2 \frac{14}{m^2}$</p>							

2. 불법건물중축 경위 및 추진상황

가자 미래로 뛰자 세계로

봉 평 면

232 - 920 강원 평창 봉평 창동 346 - 1 / 32 - 0103 / 담당 우 경 윤


문서번호 봉평 58554 -

시행일자 1995. 9. ()

(제 1 안)

받음 평창경찰서장

참조

취급	제송	면장
보존	년	
부면장		/
기안	우경윤	산업개발계장  협조

제목 건축법 위반건축물 건축주 고발

건축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증축)를 득하지 아니하고 불법증축한 아래 건축내용의 행위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34조 규정에 의거 고발합니다.

고 발 사 항

행위자		주민등록 번호	건축위치	불법사항(증축)			비고
주소	성명			층수	용도	면적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286	문종욱	391205- 1331214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286-5	1	대중 음식점	약 25㎡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352	심상춘	480331- 1331011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373-12	1	주택	40.8㎡	

붙임 : 1. 고발서 2 건

2. 임의진술서 2 건 끝.

(제 2 안)

받음 받는곳 참조

제목 불법건축물 조치 통보

1. 봉명 58551-1446('95. 6. 29)호의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불법증축중지 통보한 건축물에 대하여 귀하께서 조치하지 않아 관계 기관에 고발조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고 발 사 항

행 위 자		주민등록 번호	건축위치	불 법 사 항(증축)			비 고
주 소	성 명			층수	용 도	면 적	
평장군 봉명면 창동리 286	문 중 옥	391205- 1331214	평장군 봉명면 창동리 286-5	1	대중 음식점	약 25㎡	
평장군 봉명면 창동리 352	심 상 춘	480331- 1331011	평장군 봉명면 창동리 373-12	1	주 택	40.8㎡	

받는곳 : 창동리 286 문중옥, 창동리 352 심상춘

끝.

(제 2 안)

받음 평 장 군 수

참조 도 시 과 장

제목 불법건축물 조치사항 보고

우리면 창동리 286-5(문중옥) 및 373-12번지(심상춘)내 건축물 불법증축건을 적발하여 건축법 제9조에 의거 '95. 6. 29일 증축중지 및 원상복구지시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아래와 같이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하였음을 보고합니다.

고 발 사 항

행 위 자		주민등록 번호	건축위치	불 법 사 항(증축)			비 고
주 소	성 명			층수	용 도	면 적	
평해면평면리 장동리 286	문 중 유	391205- 1331214	평해면평면리 장동리 286-5	1	대중 음식점	0.25㎡	
평해면평면리 장동리 352	심 상 춘	480331- 1331011	평해면평면리 장동리 373-12	1	주 택	40.8㎡	

끝.

평 면 장

고 발 서

피 의 자	본 적	명창군 봉명면 장동리 286		
	현주소	명창군 봉명면 장동리 286		
	성 명	문 증 옥		
	생년월일	391205	직 업	서비스업 (서울라사)
고 발 사 유	○ 건축물의 건축시 건축법 제 9 조에 의거 건축신고후 건축행위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불법증축을 하였음.			
기타 참고 사항	○ '95. 6.'29일 불법증축중 적발하여 공사중지및 원상복구 통보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			
적 용 법 규	건축법 제 9 조 건축법 제 80조			
<p>위와 같이 문 증 옥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 234 조에 의거 고발함.</p> <p style="text-align: right;">1995년 9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고 발 인 : 봉 명 면 장</p> <p>명창경찰서장 귀하</p>				

임 의 진 술 서

○ 진 술 인

- 주 소 : 평창군 봉평면 장동리 179
- 성 명 : 우 경 운 (주민등록번호 : 681101-1813219)
- 소 속 : 봉평면 산업개발계 (직급 : 지방토목서기)

○ 진 술 내 용

- 상기 본인은 '94. 10. 30일부터 위 소속지에서 현재까지 건축. 토목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오면서 금번 불법건축행위로 적발된 평창군 봉평면 장동리 286번지에 거주하는 문중옥에 대하여 고발하고 임의진술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 본 건축물은 '88. 12. 30일 최상현으로부터 문중옥이 소유권이전을 하여 '89. 8. 22일 주택에서 대중음식점(서울식당)으로 용도변경했으며 금번 건물을 수리및 증축하여 대중음식점(고래벳숙)영업을 하고있습니다.
- 도시계획구역내 건축행위는 건축법 제 9 조에 의거 신고후 이루어져야하나 신고절차 없이 무단 증축하여 건축법 제 80 조 (건축법 제 9 조의 규정을 위반한 건축주)규정에 의거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1995. 9.

진 술 인 : 우 경 운



경 위 서

- 제 목 : 명장군 봉명면 장동리 286번지 문 증 옥 불법증축건
- 위 치 : 명장군 봉명면 장동리 286-5 (서울식당)
- 배 경 : 1995. 6. 20일 상기 건축주 문증옥이 면사무소에 찾아와 상기 서울식당건물 대수선가능여부 문의하여 당시 건축담당 지방토목서기 우경운은 상기건물은 도시계획도로에 저축되어 대수선불가함을 답하였으며, 건축주 문증옥은 지붕에 비가새니 지붕수리만 하겠다고 한바 건축담당 우경운은 주요구조부 지붕틀 3개이상 해체하지않는 범위(대수선에 해당하지않는 범위)내에서 수리가능하다고 답했음.
- 경 위
 - 1995. 6. 29일 건축물 불법증축사실 발견하여 공사중지및 원상복구통보(1차)
 - 1995. 7. 19일 건축물 불법증축사항 군정에 보고(사회과)
 - 1995. 8. 증축공사완료하여 불법건축물 증축부분 철거통보(2차) - 면장 미결재로 미시행.
 - 1995. 9. 건축법 위반 건축주 고발조치 - 면장 미결재로 미시행.
- 적용법규
 - 건축법 제9조 (건축신고)
 - 건축법 제80조 (벌칙)
- 불법사항
 - 건축물 불법증축 : 면적 2.5㎡

작 성 자 지방토목서기 우 경 운

3. 식품접객업 허가 경위

식품접객업 변경허가 처리경위

I. 업소현황

업종별	허가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면적	전화번호	비고
일반음식점	제5-22호	고래뱃속	주지민	봉평면 창동리 286-5	58.12 m ²	32-0014	

- 최초허가 : '84. 9. 13
- 변경신고 : '91. 7. 5(김선옥-이분이)
- 변경신고 : '95. 7. 22(이분이-이규을, 서울식당-고래뱃속)
- 변경허가 : '95. 9. 13(구조변경 허가)
- 변경신고 : '95. 10. 23(이규을-주지민)

II. 허가사항 변경허가 처리내역

- '95. 7. 20 : 민원서류 접수(신청인:이규을)
- '95. 7. 21 : 1차 영업장 현지 시설조사
- '95. 7. 22 : ①영업자지위승계 및 상호변경신고 수리
②1차 보완 - 건축물 증축부분 처리결과 제출요구
- '95. 9. 1 : 2차 보완 - 건축물 증축부분 처리결과 제출요구
- '95. 9. 12 : 2차 영업장 현지 시설조사
- '95. 9. 13 : 변경허가 처리 통보

가자 미래로 뛰자 세계로

평 명 면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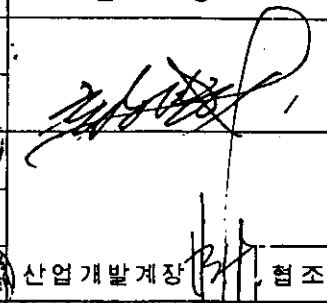
232 - 920 강원 평장 봉명 장동 346 - 1 / 32 - 0103 / 담당 우 경 운

문서번호 봉명 58551 - 1693

시행일자 1995. 7. 19.

받음 평 장 군 수

참조 사 회 과 장

취 급	체 승	면 장
보 존	년	
부면장		
기 안	우경운	


제목 건축물 불법증축 사항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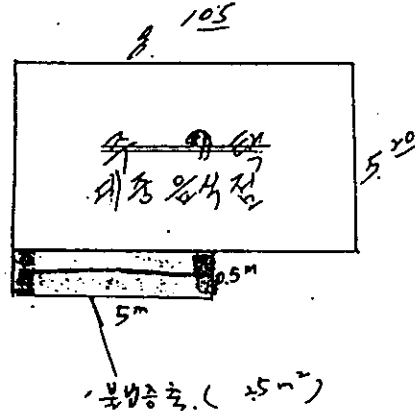
평장군 봉명면 장동리 286-5번지상의 문중옥씨 소유 대중음식점(서울식당)건물에 대하여 '95. 6. 29일 불법증축중 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불법증축 중지통보및 원상복구 지시하였으나 현재까지 미조치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붙임 : 증축명면도 1 부



평 명 면 장

작성자  검사자

건물실측도	면적산출	변동상황	이동사유	소유자		처리 년월일	기록자 확인	
			이동년월일	주소	성명			
 <p>10.5</p> <p>5.20</p> <p>5m</p> <p>부방층 (2.5m²)</p>	<p>주방 대형음식점</p> <p>$9.105 \times 5.20 = 47.71m^2$</p>							

관 장 부 명 서

1. 출장일시 : '95. 7. 21(01일간)
2. 출장지역 : 봉평면
3. 출장목적 : 신청접객영업 허가사항변경허가
4. 수행사항 :

봉평면 창동리 소재 이규음이 신청한 구조변경허가 및 지위승계, 상호변경신고에 대하여 현지출장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 하였기 보고 합니다.

가. 소재지 : 봉평면 창동리 296 -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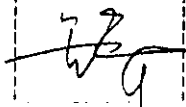

나. 대표자 : 이 규 음 (661210 - 1991294)

다. 출장내용 및 의견

○ 상기 소재 업소는 업소전면의 벽체가 노후하여 벽체 개보수시 인도면으로 약 50cm정도 돌출되어 봉평면으로 부터 건축물 불합종축 중지 통보를 받았으나 미조치된 상태이므로 구조변경허가건은 대안과 같이 서류보완 지시후 처리가, 사료되며,

○ 영업자지위승계, 상호변경신고건은 전 영업주(이분이)와 현재 영업주(이규음)가 동의 하였기 민원인의 편의요모를 고려하여 신고처리 코자 합니다.

붙임 : 구조변경 대안 1부. 끝.

계	계 장	과 장	결 제
			

1995. 7. 21.

지방보건주사보 : 한 왕 기

원서류
처리기간: '95. 8. 31

평 창 단

232-800 강원 평창 평창 하리 210

/ 32-2011~18

/ 전승

문서번호 사회 65453 - 110
시행일자 1995. 7. 22. (년)
(제 1 안)
발음 봉평면 창동리 286-5
참조 [고래뱃속] 이 규을

취급		군 수	
보존	5년		
부군수			
과 장	정경		
기안	한왕기	위생계장	협조

제목 식품접객 구조변경 허가신청에 따른 서류보완(1차)

1. 귀하가 '95. 7. 20. 자르 신청하신 일반음식점 구조변경허가 및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신청건은 영업자 지위승계는 신고처리 되었으나, 구조변경(영업장확장)건은 귀 업소 건물의 공부대조 결과 신청하신 영업장 면적과 건축물대장에 명시된 면적이 불일치와 같이 상이한 점을 발견 하였으므로,

2.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 기본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1차 보완요구 하오니 건물을 건축물대장과 일치되도록 원상복구 한후 재 신청하거나, 관계법에 의한 건물증축 허가(신고)를 득한후 그 결과서(건축물관리대장등본)를 '95. 8. 31. 까지 우리군 민원실 또는 사회과 위생계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귀하의 식품접객업 구조변경허가 신청건은 건물의 원상복구 후 또는 증축신고 후 그 결과서가 제출된후 처리됨을 알려드리니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대안 1부. 끝.

(제 2 안)

수신 : 봉평면장

제목 : 영업자 지위승계 수리 및 영업장 구조변경허가 서류보완(1차)

1. 봉평 58551 - 1693('95. 7. 19)호의 관련임.

문서번호 사회 65453 -

1993. 11.

2. 귀 면 아래업소가 신청한 일반음식점 구조변경허가 및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신청건은 영업자 지위승계는 신고처리 되었으나, 영업장 구조변경(영업장확장)건은 업소의 영업장 면적과 건축물 대장에 명시된 면적이 상기호의 지적과 같이 상이하므로

3.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 기본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1차 보완요구 통보 하였으니, 등 업소가 건물용 건축물 대장과 일치되도록 원상복구 하거나 또는 관계법에 의한 건물증축허가(신고)를 득한후 그 결과서(건축물간대장등본)를 '95. 8. 31.까지 우리 군 사회과 위생계로 제출토록 지도 하기 바라며,

4. 아울러 식품접객업 구조변경(영업장확장)허가 신청건은 건물의 원상복구 후 또는 그 결과서가 제출된 후 처리됨을 알려주기 바람.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사항

업종명	업소명		업주명		소재지	비고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일반음식점	서울식당	고래벳속	이분이	이규을	봉평면 창동리 286-5	☎ 32-0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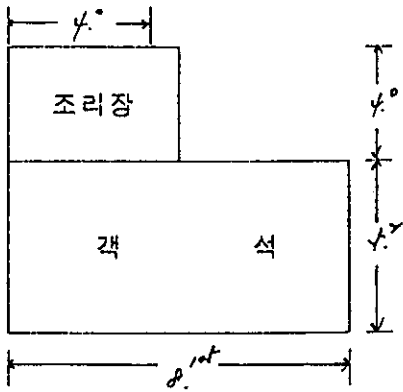
민원 통제관

(대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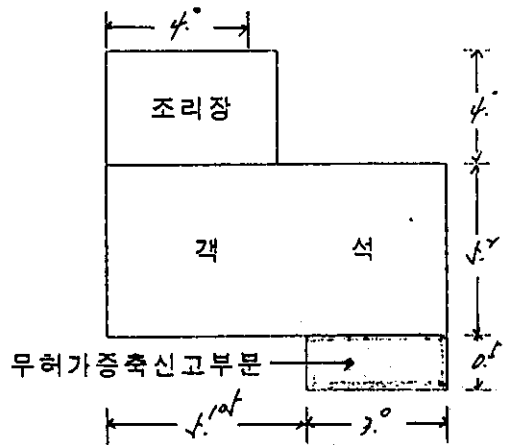
○ 소 재 지 :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286-5

○ 대 안 : 현 건축물대장의 허가건물 이외의 부분(무허가건물)에 대하여 원상복구
또는 증축허가(신고)를 득한후 결과서(건축물대장) 제출

(현 건축물 평면도)



(증축허가후 평면도)



1 원 서류
 지내기간: '95. 9. 7

평 창 군

232-800 강원 평창 평창 하리 210-2 / (0374) 32-2011~8 / 전송 33-63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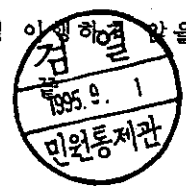
문서번호 사회 65453 - 121
 시행일자 1995. 9 1. (3년)

받음 봉명면 장동리 286-5
 [고래벳속] 이 규 을

취급	우 편	군 수
보존	5 년	[Handwritten Signature]
부군수		
과 장	전 결	[Handwritten Signature]
기안	장 재 석	위생계장 [Handwritten Signature] 협조

제목 민원사항 보완요구 (2차)

1. 사회 65453-710('95. 7. 22)호의 관련입니다.
2. 위호의 관련으로 귀하가 신청하신 일반음식점 구조변경허가 신청건에 대하여 영업장면적과 건축물대장에 명시된 면적이 일치하지 않아 1차 보완요구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아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2차서류 보완요구 하오니 '95. 9. 17일 까지 조속히 이행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이행하지 않을시는 동법 제규정에 의거 민원서류 반려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평 창 군 수

출 장 특 명 서

1. 출장일시 : '95. 9. 12.
2. 출장지역 : 봉평면
3. 출장목적 : 일반음식점 구조변경 허가에 보완지시 현지확인
4. 수행사항 :

일반음식점 허가사항 변경허가(내부 구조변경) 신청건에 대하여 2회에 걸쳐 보완요구 결과 아래와 같이 확인 하였고 특명 합니다.

가. 업 소 명 : 고래뱃속

나. 소 재 지 : 봉평면 창동리 296 - 5

다. 대 표 자 : 이 규 을 (651210 - 1331234)

라. 변경내용 : 불임 평면도 참조





 영업장 확장 : 22.0㎡에서 59.12㎡로 36.12㎡를 확장

 - 확 장 원 인 : 내실을 조리장으로 조리장을 객석으로 변경

상기와 같이 일반음식점 내부 구조변경(영업장확장)허가 신청건에 대하여 현지 사설조사 한바,

- 불임 평면도 상의 불법면적을 원상복구 조치는 하지 않았으나, 신규허가 신청이 아니고 기 허가업소의 변경허가 신청이며,
- 불법면적에 대한 원상복구 후 변경허가시 건물주인(문종옥) 보다 "세"를 주고 영업을 하는 소규모의 "고래뱃속" 영업주 이규을의 경제력과 생계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불법면적 1.5㎡ 대하여 합판으로 막아 벽지를 불인점을 감안 변경허가 처리하여 영업을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 하다고 판단 됩니다.

붙임 : 평면도 1부. 끝.

계	계 장	과 장	결 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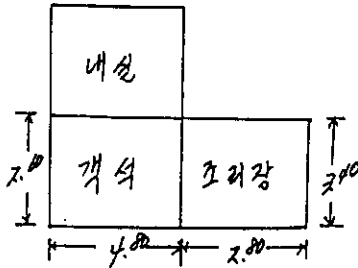
1995. 9. 12.

위 생 계 장 : 최 진 순 

지 방 보 건 주 사 보 : 한 왕 기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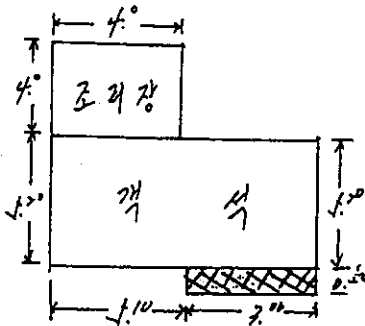
<변경전>



(면적)

◦ 조리장: $2.00 \times 2.40 = 4.80 \text{ m}^2$
 ◦ 객석: $4.00 \times 2.40 = 9.60 \text{ m}^2$
 계: 14.40 m^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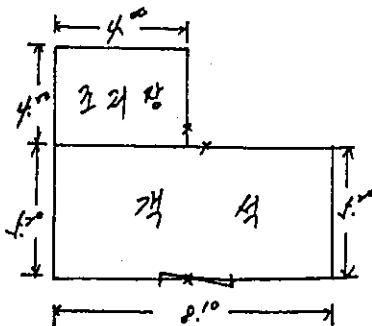
<1. 지하 보강요구시 평면도>



일정면적이 불방면적

◦ $2.0 \times 0.5 = 1.0 \text{ m}^2$

<변경후>



(면적)

◦ 조리장: $4.00 \times 4.00 = 16.00 \text{ m}^2$
 ◦ 객석: $4.00 \times 5.20 = 20.80 \text{ m}^2$
 계: 36.80 m^2

<변경내역>

- 조리장 4.80 m^2 를 16.00 m^2 로
- 불방면적 1.0 m^2 를 삭제.
- 객석 9.60 m^2 를 20.80 m^2 로 영업장 확장.

민원서류
처리기간:

평 창 군

232-800 강원 평창 평창 하리 210 / 32-2011~18 / 전송

문서번호 사회 65453 - *PM*
 시행일자 1995. 9. 13. (3 년)

[제 1 안]

수신 봉평면 침동리 296 - 5
 (고래벚숙) 이규을
 참조

취급	체 송	군 수
보존	5 년	<i>[Handwritten Signature]</i>
부군수		
과 장	전 결	
기안	한왕기	
		위생계장 <i>[Handwritten Signature]</i> 업조

제목 식품접객영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통보(구조변경)

귀하가 제출한 식품접객영업 허가사항 변경(구조변경)허가 신청건은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 '95. 9. 13일자로 허가처리 되었음을 통보하니, 허가증을 면사무소에서 수령하시고 차후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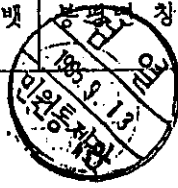
[제 2 안]

수신 : 봉평면장
 제목 : 같 은 건

귀면 아래저로부터 제출된 식품접객영업 허가사항 변경허가(구조변경)신청건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22조 1항에 의거 허가하니 허가증을 본인에게 즉시 교부하기 바랍니다.

업 종	업주명	상호명	소 재 지	허 가 면 적		비 고
				변경전	변경후	
일 반 음식점	이규을	고래벚 숙	봉평면 침동리 296 - 5	22.00㎡	58.12㎡	32-0014

첨부 : 허가증 1부. 끝



평 창 군 수

제 5-22 호



허 가 증

대표자 : 이 규 을 주민등록번호 : 661210 - 1331234
주 소 :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382-4
명 칭 : 고 래 뱃 속
소재지 :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382-4
업종명 : 일반음식점
제품종류 : 식사류, 주류

허가조건 : 1. 식품위생법 제 31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 조 규정
 에 의한 영업자 준수사항을 이행.
 2. 기타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접 객)
영업을 허가합니다.

1984 년 9 월 13 일

평 창 군 수

허가번호 :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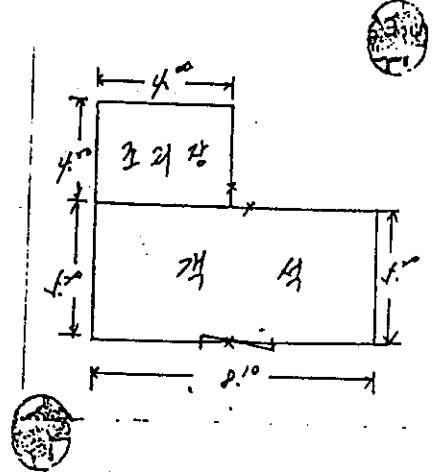
1. 영업시설의 개요 및 평면도

영업시설의 개요

<면적>
 · 조리장 $4.0 \times 4.0 = 16.0m^2$
 · 객석 $8.1 \times 5.2 = 42.12m^2$
 계 $58.12m^2$

<합수> 상수도
 <노수> 저위상 상하수도
 <조리장> 제기

평면도



2. 변경 및 처분사항

일 자	내 용	확 인
'85. 10. 24	명의변경(조현철-황순예); 및 상호변경(단골식당 - 원주식당)신고	
'87. 8. 4	영업자지위승계(황순예-김선옥) 및 상호변경(원주식당 - 서울식당) 신고	
'89. 9. 11	허가사항 변경(객실증설) 허가	
'91. 7. 5	영업자지위승계(김선옥-이분이) 신고	
'94. 6. 3	대통령령 제13782('92.12.21)호에 의거 갱신교부(구246호)	
'95. 7. 22	영업자지위승계(이분이-이규을) 신고	
'95. 9. 13.	허가사항 변경허가(구조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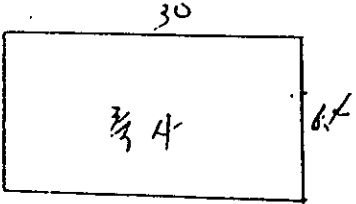
< 광희중 소유 축사시설 관련 >

4. 축사건축현황 (도면 및 건축물 대장)

건 축 물 대 장

작성자서명 날	김 재 보 (인)										가 옥 번호	117	연 락 번호		
경유부서 서명날인	인										적요				
건축물의 소재지	평창군 봉평면 평촌 리 62A 번지														
건축허가 년월일	1992년 10월 28일		허가 번호	제 호		준공검사 년월일	1993년 6월 2일								
구 조	종 별	구 분	건 축 물 면 적					변동상황	이 동 사 유 이 동 년 월 일	소 유 자 명		처 리 년월일	기 록 자 인		
			계	지 하	1 층	2 층	3 층			4 층	5 층			주 소	성 명
철 골 스리트	용 도		축사		축사						평창군 봉평면 평촌리 43	곽희경	93. 6.2	(인)	
	면 적		192.7		192.7										
	용 도														
	면 적														
	용 도														
	면 적														
	용 도														
	면 적														

작성자		검산자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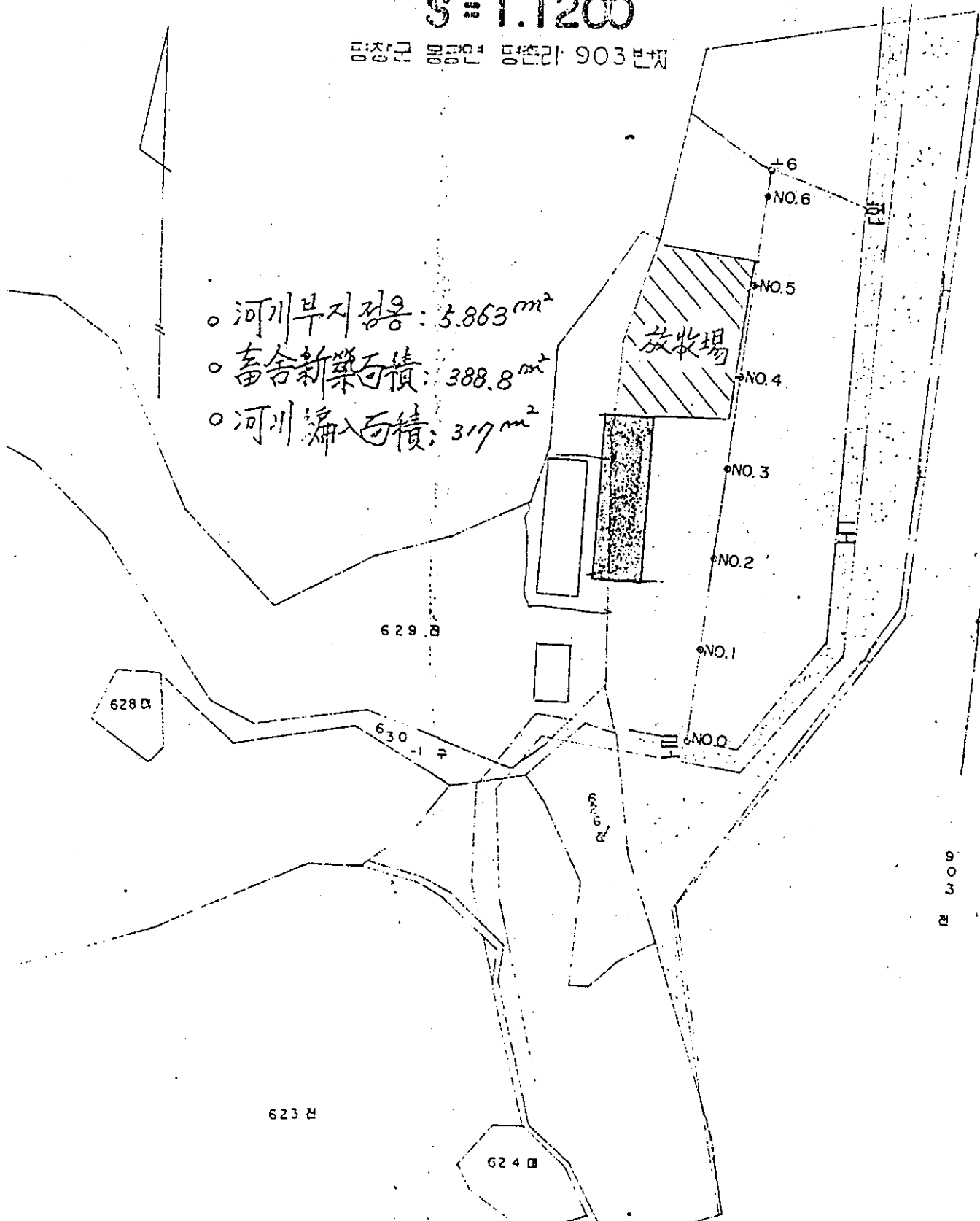
건 물 실 측 도	면 적 산 출	변동상황	이동사유	소 유 자		치 리 년월일	기 목 자 화 인
			이동년월일	주 소	성 명		
<div style="text-align: center;">  <p>30 측사 6.4</p> </div>	$30 \times 6.4 = 192 \text{ 평}$						

평안북도

Scale: 1:1200

평창군 봉곡면 평촌리 903번지

- 河川부지 정용: 5,863 m²
- 畜舍新築面積: 388.8 m²
- 河川編入面積: 317 m²



628 ㉠

62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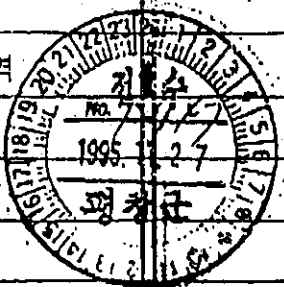
630 -1 ㉠

623 ㉠

624 ㉠

9
3
㉠

신청사항		토지이용계획확인 (신청)서				처리기간	
1, 2, 3, 4, 5, 6, 7		※ 굵은 선안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사항란은 아래의 1~7항목을 참조하여 표시하십시오.				1일	
신청인	성명	곽희영		주소			
대상지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시.군.구	읍.면	리.등				
	평창군	봉평	평촌	6-9			
확 인	1	국토이용	용도지역	(도시, 준도시, 농림, 중상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구				
			개발계획등의 수립여부				
			토지거래	(허가, 신고)구역 해당없음			
	2	도시계획	용도지역	(전용, 일반, 준)주거지역(중상, 일반, 근린, 유통) 상업지역(전용, 일반, 준)공업지역(보전, 생산, 자연) 녹지지역			
			용도지구	풍치, 주차장정비, 미관(1,2,3,4,5종), 아파트 고도(최저, 최고), 기타()			
			도시계획시설	도로(저축, 접합), 공원, 기타()			
			도시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 일단의 (주택지, 공업용지) 조성 재개발, 시가지조성			
			구역	개발제한구역(내, 저축), 기타()			
			도시계획입안사항				
용	3	군사시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당없음		
	4	농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해당없음		
	5	산림	보전임지		해당없음		
	6	자연공원	공원구역, 공원보호구역		해당없음		
	7	수도	상수원보호구역		해당없음		
	기타						




귀하의 신청에 대한 현재의 토지이용계획사항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5. 사업추진 경위 및 추진현황

평 창 군

우 232-800 / 강원 평창 평창 하리 210-2 / 전화 (0374) 32-2011-18 / 전송 33-6356

· 문서번호 축산 51521 - 714
 시행일자 1995. 8. 26. (3)
 경유 (제 1 안)
 발음 : 받는곳 참조
 참조 :

취급	체송, 우편	군 수
보존	5	
부군수		
과 장	전 결	축산계장 가축위생계장 낙농초지계장
기안	안재구	
		협조

제목 : '95 젖소경쟁력제고사업 농가별 사업비 결정통보

1. 축산 51521- 463(95, 5, 22)호 및 동 51521- 713 (95. 8. 26)호와 관련입니다.
2. 관련호에 의하여 확정된 '95 젖소경쟁력 제고사업 농가별 사업량 및 사업비를

붙임과 같이 결정하여 추진하니 사업마무리에 지도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95 젖소 경쟁력제고사업 농가별 사업비 결정내역 1 부 끝.

받는곳 : 도 (1, 3, 4, 8), 평창축협장.

(제 2 안)

발음 : 받는곳 참조

제목 : '95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 물량 및 사업비 결정통보

1. '95 젖소경쟁력제고사업 신청된 물량중 다음과 같이 결정되어 사업비를 확정통보 하오니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2. 현재까지 사업 추진실적을 2회에 거쳐 확인한바 전체적인 사업이 지연됨은 물론이고 지원용자금 대출사항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나 사업 진도에 따라 해당 읍면의 확인 과정을 거쳐 용자금 대출하여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3. 사업물량 및 사업비 결정내역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결 정 내 역					비 고
		계	지방비	축 발 기 금		자 담	
				보 조	음 자		

평 창 군 수

받는곳 : 대화면상안미리 최인선의 18호

'95젓소경쟁력 제고사업 농가별 사업비 결정내역

사 업 농 가		무 자 계 회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천 원)					자 담	계
				지방비	축 만 기 금			보 조		
주 소	성 명									
계	19호			13,020	28,970	366,311	395,281	138,719	547,020	
대화상안	최 인 선	축 사 시 설 싸이로 시 설 소 계	120명 30편				33,600 2,100 35,700	33,600 2,100 35,700	14,400 900 15,300	48,000 3,000 51,000
도암차항	김 무 남	축 사 시 설	50명				14,000	14,000	6,000	20,000
평창다수	이 하 선	싸이로 시 설	60편				4,200	4,200	1,800	6,000
평창다수	우 영 칠	축 사 시 설 싸이로 시 설 소 계	60명 30편				16,800 2,100 18,900	16,800 2,100 18,900	7,200 900 8,100	24,000 3,000 27,000
대화하안	이 회 영	축 사 시 설	50명				14,000	14,000	6,000	20,000
평창다수	차 현 규	축 사 시 설 착 유 시 설 소 계	60명 1조				16,800 5,600 22,400	16,800 5,600 22,400	7,200 2,400 9,600	24,000 8,000 32,000
방림운교	권 수 길	축 사 시 설	60명				16,800	16,800	7,200	24,000
방림운교	김 인 기	초 지 조 성	3 ha		5	5	2,977.	2,977.	5,955	5,955
평창계장	공 빙 기	축 사 시 설	60명				16,800	16,800	7,200	24,000
도암차항	신 영 교	초 지 보 완	6 ha		2,610	2,610	5,220		5,220	
도암횡계	이 경 회	축 사 시 설 착 유 시 설 냉 각 기 소 계	220명 1조 1대				60,491 5,600 3,500 69,591	60,491 5,600 3,500 69,591	27,509 2,400 1,500 31,409	88,000 8,000 5,000 101,000
방림운교	한 빙 세	트랙타부속기	3종	5,310	2,655	15,930	18,585	2,655	26,550	
도암횡계	서 경 환	축 사 시 설	60명				16,800	16,800	7,200	24,000
방림운교	정 국 보	트랙타부속기	3종	5,310	2,655	15,930	18,585	2,655	26,550	
대화상안	김 중 근	축 사 시 설	100명				28,000	28,000	12,000	40,000
방림운교	김 인 제	초 지 조 성 축 사 시 설 소 계	9ha 50명		5 8,932.	5 8,932.	5 14,000	5 14,000	17,865 6,000	17,865 20,000
방림방린	진 두 봉	축 사 시 설 빛 켜 수 기기 소 계	60명 1대	2,400 2,400	1,200 1,200	16,800 7,200 24,000	16,800 8,400 25,200	7,200 1,200 8,400	24,000 12,000 36,000	
"운교	조 빙 오	축 사 시 설	60명				16,800	16,800	7,200	24,000
대화계수	최 재 연	초 지 조 성	8ha		7,940	7,940	15,880		15,880	

평 창 군

우 232-800 / 강원 평창 평창 하리 210-2 / 전화 (0374) 32-2011-18 / 전송 33-63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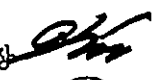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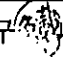
문서번호 축산 51521 - 789

시행일자 1995. 9. 27. (3)

경유

발음 : 받는곳 참조

참조 :

취급	체 송	군 수	
보존	5		
부군수			
과 장	전 결	축산계장  낙농초지계 	
기안	안제구 		

제목: '95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 추가 희망량 조사

1. 축산 51521- 713(95. 8. 26)호화 관련입니다.
2. 관련호에의하여 '95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량 확정 추진중 포기물량이 발생하여 사업 추가 신청 희망자를 파악코저하니 '95. 9. 30한 조사 보고하기 바랍.
3. 축협장은 이경희에게 지원되는 사업비용자대출 하지 마시기 바라며 추후 농가 제선정 계획이니 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추가 신청 사업 물량및 재원

세부 사업별	사업 량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	용 자	자 담	
축사시설사업	220평	88,000	60,491	27,509	도암 황계 이경희 사업 포기분임
차 유 시 설	1식	8,000	5,600	2,400	
냉 각 기	1대	5,000	3,500	1,500	

끝.

평 창 군 수

받는곳 : 도(1,3,4,5,6,8), 축협장.

봉 명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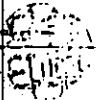

우232 - 920 / 강원도 명창군 봉명면 창동1 리 / 전화(0374) 32-7301/전송605담당 변훈남

문서번호 봉명51521 - 2317

시행일자 95. 10. 11

받음 명 장 군 수

참조 축 산 과 장

선결	과 장		지 시	농반의 신의권차 근축이행	
접	일자 시각	95. 10. 11	결		
수	번호	2317	재		
처리과			공	계 장	
담당자			람		

제목 '95 젓소 경쟁력 제고사업 추가 희망량조사보고

축산 51521 - 789(95, 9, 21) 호에의거 '95 젓소경쟁력 제고사업 추가희망량을
붙임과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사업신청서 1 부 끝.

봉 명 면




축산분야사업신청서

주 소	평창군 봉령읍, 면 봉령 1 리			전화번호	22-0074
조직 또는 단체명	주민등록 번호	5-0309 -1161613	성 명 (대표자)	곽희중	
신청사업명	'95 작소 경영복합사업				
소 요 사 업 비 (천원)	총 액	중앙보조	중앙용자	지 방 비	자 부 담
	52,000		26,997		19,009
세부 계획	이 면 참 조				
사육 기반	사육 시설 : 축사- 90평, 창 고- 평, 싸이로- / 기 조사료기반: 초지- ha, 사료포- 3 ha, 기타- / ha 장 비 :				
신청 축종 사육 경력	79년 5월 부터 95년 9월 까지 (17 년)	최종학력	년 월 일 봉령국민학교		
축산교육 및 훈 련	기 간 (년월일)	교 육 분 야	실 시 기 관 명		

-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농림수산정책자금용자관련자료 1부. 끝

위와 같이 95년도 사업신청계획서를 제출합니다.

1995년 10월 일

신청자 : 곽희중 

평창군수 귀하

신용상태 및 대출가능액 검토의견서

(2011년 10월 6일 기준)

1. 사업신청자 인적사항 및 사업신청 내용

주 소	경기도 용인시 권선1동			전화번호	31-0064	
조직·단체 회사명		주민등록 (사업자) 번호	50301 -1106613	대표자 (성명)	박 리 중	
신청사업명	가 가소 환경 제어기 설치					
소요사업비	총액	52,000천원	보조		융자	29,100
					지부담	16,900

2. 재산상태

자산종류	수 량	예상평가액	부채종류	차 입 치	금 액
전	03140	140,000천원			천원
계			계		

3. 조합 거래상황 및 신용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원여부 : <u>어</u> 부 ○ 조합이용도 : <u>적극</u>, 보통, 거래없음 ○ 과거 1년간 연체사실 : 유, <u>무</u> (조사기준일 연체금액) : 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도, 대위변제사실 : 유, <u>무</u> ○ 신용상태 : <u>양호</u>, 보통, 불량 (개인신용정보 조회표 참조)
---	--

4. 대출가능액 (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 량	대출가능액	담보물건소제지	소유자(관계)
신용대출 신용보증 담보대출 합 계	전	2872 ^m 2872 ^m	40,000 40,000		

※ 담보대출의 담보종류는 대지, 건물, 전답, 과수원, 임야, 공장, 선박 등으로 구분

5. 종합의견

합동조합장 (인) 
 趙張秀哲

농림수산정책자금 용자관련 자료

(96년 9월 29일 현재)

1. 사업신청자 인적사항 및 사업신청 내용

주 소	경천군 본성면 경촌 1리			전화번호	32-0054		
조직·단체·회사명		주민등록(사업자)번호	520309-1166613		대표자(성명)	곽희중	
신청사업명	95 깻소갈강령제내		개인(소득)연	40,000원		법인·단체(자본금)	천원
소요사업비	총액	19,000	천원	보조	용자	35,991	자부담 19,000%

2. 재산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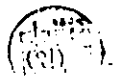
(단위 : 천원)

재 산 현 황 (뒤보채평가능물건)					예 금 (공 재) 현 황			
소제지	소유자명	종 별	면 적	예 상 평 가 액	기 담 보 선 정 액	기 관 명	종 류	금 액
경천 1리	곽희중	전	23,140㎡	140,000				
금융기관 부채현황								
						기관명	대출일	상 환 기
						축협	95.	금 액
								19,000

※ 재산현황에는 토지, 건축물, 선박, 공정, 가축부수 등 포함

3.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부 대출회망액 : 27,000 천원

작성 기 : 성명 곽희중



평 창 군

우 232-800 / 강원 평창 평창 하리 210-2 / 전화 (0374) 32-2011-18 / 전송 33-6356

신청번호 축산 51521 - 816
 시행일자 1995. 10. 18. (3)
 경유
 받음 : 받는곳 참조
 참조 :

취급	제 송	군 수
보존	5	[Handwritten Signature]
부군수		
과 장	전 결	축산계장 [Handwritten Signature]
기안	안재구 [Seal]	낙농초지 [Seal] 협조

제목: '95 축산 발전 사업 신청 및 사업계획서 검토의뢰

1.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농림수산부 훈령제821호)과 관련입니다.
 2. '95 축산분야 사업농가중 일부 농가의 사업포기에 따라 불임과같이 추가 희망 농가의 신청서가 접수되었기 검토의뢰하오니
 3. 농촌지도소에서는 검토의견서, 평창축협장은 신용상태 및 대출가능액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95. 10. 21일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젓소부분 사업 신청서 사본 1 부 끝.

평 창 군 수

사업신청 검토 의견서

(1995 년 10 월 20 일)

1. 사업신청사 인적사항

신청사업명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성 명	곽 희 중	연령	54	주소	봉평면 평촌1리	
영농 경력	24	사회활동	없 음		교육훈련	겨울.여름농민교육
금후 농가 유 형	재촌전업농	해당농가 기술수준	상		영농승계 자유무	없 음

☆ 영농경력은 축종별 사육경력과 무관함

2. 소유자원

경지규모 (ha)		가 축(두)			농기계(대)		
소유농지	경작농지		젖 소		경운기	트랙터	기타
0.7	2.3		43		1	1	1

3. 예상소득 및 입지성

개 별 능 가		법 인 체	
예상소득(천원)	입 지 성	예상순수익(천원)	입 지 성
181,549(100두)	사육입지성 적합		

☆ 농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입지성만 기재

4. 종합 의견

○ 영농계속의지 : 영농의지 있음
○ 토지, 자본, 노동력, 적합유무 : 3 개 사항 공히 적합하나 장비 및 초자원보유 미흡
○ 금후 기술교육 이수방향 : 영농기술수준 상
○ 대상사업 지역의 입지성 적합여부 : 중산간지(해발500m)로 사육입지 여건양호
○ 사업의 장기전망 : 타지역 비교 우위로 경쟁력 가능함
○ 사업계획성의 타당성 여부 : 축사시설 현대화 및 착유시설 보완계획으로 타당함

평 창 군 농 촌 지 도 소 장



군 농발위 축(수)산 분과위원회 개최 결과

개최 일시 : '95. 10. 23 : 10: 20- 11:00

장 소 : 군청 소회의실

참석 인원 : 7명

농발위원 : 5명(이상국, 이영철, 김수돈, 김대수, 정의수)

유관기관 : 2명(기술보급과장, 축협전무)

심 의 및 결 과

- '95 축(수)산 분야 지원농가중 일부변경및 농가 지원내역 심의
결과 —— 군수 제시원안대로 전원일차 가결
- '95 축산분야 경쟁력제고사업 조정 내역 —— 불임참조

불임 : 1. 심의 의결서 1 부

2. 참석자 명부 1 부 끝.

심의의결서






'95 평창군 농어촌 발전 심의회 축(수)산 분과 위원회에서 축산분야
(젓소) 지원농가중 일부 변경및 농가지원내역 일부 조정 안을 아래와같이 심의함.

심의안건 : '95 축산분야(젓소) 경쟁력 제고사업 대상자 변경및 농가별 지원
내역 일부 조정

심의결과 : 원안대로 심의확정
 원안수정확정.

1995. 10. 23.

심 의 자

구 분	소 속 (주 소)	성 명	서명 날인	비 고
위원장	평강동평	이 상국		
위원	평창군청	정 의수		
위원	평안 무이리	김 의수		
위원	평안 칠거리	이 영채		
"	평안 통산리	김 수돈		

평 장 군

우 232-800 / 강원 평창 평창 하리 210-2 / 전화 (0374) 32-2011-18 / 전송 33-6356

문서번호 축산 51521 - 893

시행일자 1995. 10. 23. (3)

경유 (제 1 안)

발유 : 받는곳 참조

참조 :

취급		군 수	1
보존	5	김용우 10부	
부군수	박상만		
과 장	김노영	축산계장	
기안	안재구	낙농초지	협조

제목: '95 젖소 경쟁력제고사업 물량 조정통보

1. 축산 51521 - 789('95. 9.21) 호와 관련입니다.
2. 관련호에한 '95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중 사업 포기물량에 대하여 불임과 같이 조정하여 추진하니 해당읍면장은 사업시기 일실치않도록 사업 지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3. 평창축협장은 동 사업 조정에 대한 용자금 집행에 착오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임 : '95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 지원농가 조정내역 1 부 끝.

받는곳 : 도(4.5,8), 평창축협.
(제 2 안)

발유 : 받는곳 참조

제목 : '95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량및 사업비 확정 통보

1. 귀하께서 신청하신 '95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 물량신청건에 대하여 다음과같이 사업량및 사업비를 확정하여 통보하오니 모든 사업을 결빙기이전에 마무리되도록 추진하여주시기 바라오며.

2. 동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대출 서류를 평창축협에 구비제출하시어 사업진행에 불편이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95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 물량및 사업비 확정내역

'95 젓소경쟁력 제고사업 지원농가 조정내역

당 초								정							
대상농가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대상농가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주소	성명			계	보조	용자	자담	주소	성명			계	보조	용자	자담
계	1호			101,000		69,591	31,409					101,000		69,591	31,409
도암면 횡계2	이경희	축사시설	220평	88,000	0	60,491	27,509	대화	이상국	축사시설	60평	24,000	0	16,800	7,200
								하안미	이근오	축사시설	60평	24,000	0	16,800	7,200
								개수2	곽희중	축사시설	100평	40,000	0	26,891	13,109
								봉평면 평촌1	3호		220평	88,000	0	60,491	27,509
			착유시설	1조	8,000	0	5,600	2,400	봉평면	곽희중	착유시설	1조	8,000	0	5,600
		냉각기	1대	5,000	0	3,500	1,500			냉각기	1대	5,000	0	3,500	1,500

'95짓소경쟁력 제고사업 농가별 사업비 결정내역

신청농가		투 자 계 획												
		사업명	사업량	지방비	사 업 비 (천 원)			자 담	계					
					보 조	용 자	계							
방림운교	한 빙 채	트랙타부속기	3중	5,310	2,655	15,930	18,585	2,655	26,550					
도암횡계	서 경 환	축 사 시 설	60평			16,800	16,800	7,200	24,000					
방림운교	정 국 보	트랙타부속기	3중	5,310	2,655	15,930	18,585	2,655	26,550					
대화상안	김 중 근	축 사 시 설	100평			28,000	28,000	12,000	40,000					
방림운교	김 인 재	초 지 조 성 축 사 시 설	9ha 50평		5 8,932.	5 8,932.	5 17,865 14,000	6,000	17,865 20,000					
										5 8,932.	5 22,932.	5 31,865	6,000	37,865
방림방림	전 두 봉	축 사 시 설 벧짚수거기	60평 1대	2,400 2,400	1,200 1,200	16,800 7,200 24,000	16,800 8,400 25,200	7,200 1,200 8,400	24,000 12,000 36,000					
"운교	조 병 오	축 사 시 설	60평			16,800	16,800	7,200	24,000					
대화개수	최 재 인	초 지 조 성	8ha			7,940	7,940	15,880	15,880					
"하안미	이 상 국	축 사 시 설	60평			16,800	16,800	7,200	24,000					
"개수2	이 근 오	축 사 시 설	60평			16,800	16,800	7,200	24,000					
봉평평촌	과 회 중	축 사 시 설 착 유 시 설 냉 각 시 설	100평 1조 1대			26,891 5,600 3,500 35,991	26,891 5,600 3,500 35,991	13,109 2,400 1,500 17,009	40,000 8,000 5,000 53,000					

* 트랙타부속장비구입품목: 트랙타, 로타리, 모다.

봉 평 면

우232 - 940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창동1 리/ 전화(0374) 32-0301/전송605담당 변훈남

문서번호 봉평51521 -2/38

시행일자 95. 10. 25.

발음 평촌1리 과 회 중

참조

취 급	제 송	면 장
보 존		
부면장	서기	
기 안	변 훈 남	産業開發係長: 李 煥 宗

제목 '95 꺾소 경쟁력 제고사업 확정통보

'95 꺾소경쟁력 제고사업이 다음과같이 확정되었기 통보하오니 조기에사업을착수
동결기이전에 사업이 완료될수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보 조	응 자	자 담	
계		53,000		35,991	17,009	
축사시설	100평	40,000		26,891	13,109	
착유시설	1조	8,000		5,600	2,400	
냉각기	1대	5,000		3,500	1,500	

끝.

봉 평 면 장

여신관리자금 인출(소요자금) 명세 확인서

1. 사업명 : , 95 잿소 경쟁력 육성사업
2. 자금소요액(인출요청액) : 금이천만원 (₩20,000,000)
3. 자금소요 명세내역

(금액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인출요청액	진도 (5)	비고
축사산축	100명	26,891	} 20,000	10%	
작목시설	1조	5,600			
냉각기	1대	3,500			






○ 평창군 축산업협동조합 여신관리자금의 본인구좌에 입금된 , 95 잿소

경쟁력 육성사업 대출자금중 본인의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인출하고자 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 주소 : 평창군 봉평읍 면평리

성명 : 곽희중 (인)

○ 귀하가 평창축산업협동조합의 여신관리 자금에서 인출요청한 금액은
귀하의 사업계획 및 동 추진실적을 감안할 때 적정한 금액임을 확인함.

담당자	계장	부담장	면장	결재일자
				

199 년 // 월 24 일

-확인자 소속 : 직급지정후취성명 변훈남 인

봉 평 면 장

건축물 착공신고서

처리기간

7 일

※ □ 안에 내용은 신청자가 기록하지 않습니다. 허가번호 □□□□□□□□

① 건축장소		평창군 봉령면 평촌리 62-04나	
건축주	② 성명	곽의중 (중첩)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소	평창군 봉령면 평촌리 64m. (전화)	120309-1105640
공사 감리자	⑤ 성명		⑥ 면적번호
	⑦ 사무소명		⑧ 등록번호
	⑨ 주소	(전화)	
공사 시공자	⑩ 성명또는상호	(인)	⑪ 건설업면허번호
	⑫ 주소	(전화)	
⑬ 착공일자		12월 9일	⑭ 사용검사예정일
		년	월 일

건축법 제 16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1995년 12월 9일

신고인 **곽의중** (중첩)

봉평면장 귀하

첨부서류 : 동별 건축내용

건축물(중첩) 1층 1실

수수료

없음

30304-06931 민
. 92. 5. 1

210mm X 297mm
신문용지 54g/m²

선결면장	전재(동할)	부면장	서
접수일시	번호	세장	유
처리과	처리인		

<input type="checkbox"/> 농·어업용, 주택등 건축, 대수선신고서 <input type="checkbox"/> 취락지역안의 건축신고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소규모건축신고서	처리기간 <div style="font-size: 2em; margin: 5px;">7</div> 인
신고번호 □□-□-□□□□	

※ □안의 내용은 신청자가 기록하지 않습니다

건축주 □	①성 명	곽 희중	<input checked="" type="checkbox"/> 주민등록번호	520309-1105660
	③주 소	평리군 봉령면 평리리 64 (전화)		
대 지 조 건	④위 치	" " " 624번지		
	⑤지 역	순농진 □□□	⑥지 구	□□□
	⑦지 목	22 □□	⑧면 적	624.2 m ²
용 도	⑨주 용 도	휴사 □□□	⑩부 속 용 도	
	규 모	⑪건축면적	388.8 m ²	⑫면 면 적
⑬지 하 면적		□□□	⑭건축물최고높이	4.0 m
⑮건 폐 율		□□□	⑯층 수	지상 (/) 층
⑰용 적 율		□□□ %		지하 (.) 층
⑰구 조	철근콘크리트 □	⑲공사종류	A23 □	
⑳착공예정일	75년 12월 일		㉑사용검사예정일	
㉒주택형태	□		㉓세대수	
㉔주차장	m 대			

㉕기타특기사항

선 결 면 장			부 면 장	
계수일시	1975. 12/10	번호	세 장	
처리과	산림계	118		

농지전용신고증

① 신고번호		제 6/ 호						
신청인	②성명(대표)	과 의 중			③주민등록번호	520309- 1105610		
	④주소	봉평면 평촌리 643번지						
신청토지	⑤농지의소재지	봉평면 평촌리 629번지						
	⑥농입진흥지역	진 용 빈 칙 (㎡)			⑩전용하고자 하는 목적	⑪비고		
	용도구분	⑦개	⑧답	⑨전				
	농입진흥구역 (절대농지)							
	농입보호구역 (상대농지)	624			624	축사신축		
	농입진흥지역 밖							
개 624								
⑫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 57 조 해당호		제 57 조 해당호					제 호	
⑬토지현황 및 용도		축사신축						
신청토지의 지번별 내역								
⑭소재지			⑮지번	⑯지목	⑰면적	⑱농입진흥지역 용도구분	⑲소유자	⑳변경하고자 하는 지목
군	읍·면	리			(㎡)			
평창	봉평면	평촌리	629	전	624	상대	곽정근	축사부지
		이	마	이	밖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 57 조 및 농지의보전 및 이용에관한법단 시행규칙 제 11 소의 2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 교부합니다.								
992년 6월 7일 평창군								

○ 사업착공전에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법 제 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 331 -

6. 하천무단점용 경위 및 처리결과

제 출 서 류

건 명	하천불법용도변경사항 조치계획	비 고
<p>2. 하천무단점용 및 불법건축물 설치와 관련 사항</p>	<p>4. 하천무단점용경위 및 처리결과</p> <p>가. 하천불법 용도변경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행위자 인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소 : 평창군 봉평면 평촌 1리 629번지 - 성 명 : 곽 회 중(남 44세) ○ 하천 점용허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 봉평면 평촌 1리 903번지선(인근지번 629번지⇒전) - 점용허가면적 : 5,863㎡ - 점용허가기간 : '95. 2. 27 ~ '99. 12. 31까지 ○ 불법행위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부지 약 317㎡에 영구건물인 축사신축(사유지 포함) - 축사신축면적 : 449.4㎡ <p>나. 하천관련 법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은 국유재산법제3조에 의한 국유재산으로서 같은법 제4조에 의한 공공용 재산임. ○ 국유재산법제5조(국유재산의 보존)에 의거 누구든지 국유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유재산법제24조 제3항에 의한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받은 재산상에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 국유재산법제52조(불법시설물의 철거)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국유재산을 점용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건 명	하천불법용도변경사항 조치계획	비 고
	<p>설치한 때에는 행정 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 기타 필요한 행정명령을 할 수 있다.</p> <p>○ 국유재산법제58조(벌칙)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 하천법제81조(벌칙)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다. 처리실적</p> <p>○ 하천무단점사용 현지확인 - '96. 2. 27(화) ⇒ 지역계획계장(출장복명)</p> <p>○ 하천법위반자 적발보고 - 봉평 58170 - 432('96. 3. 2)</p> <p>○ 고발 : 하천법 위반혐의 관련자 고발⇒평창경찰서 - 건설 58000 - 333('96. 3. 4)호</p> <p>라. 향후조치계획</p> <p>○ 원상회복 의무부여(하천법제35조) - 1차 : '96. 3. 1 ~ '96. 3. 30 - 2차 : '96. 4. 1 ~ '96. 4. 15</p>	

봉 평 면

우 232-940 강원 평강 봉평 창동 1리 / TEL. (0374) 32 - 0103 / 담당 박 용 원

문서번호 봉평 58551 - 484

시행일자 1995. 12. 28.

경 유

받 음 평강군 봉평면 명촌1리
643번지 과 회 중

참 조

취급	우	면	면	장
보존	년			
부면장	[Handwritten Signature]			
	[Handwritten Signature]			
기안	박 용 원	봉평면 산업개발계장	협 조	

제 목 불법건축물(축사)통보

1. '95. 12. 9일자로 귀하께서 접수한 건축 신고서를 득하지 아니하고 시공중에 있는 불법건축물을 공사중지 및 철거통보하오니 '96. 1. 8일까지 원상복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조치하지 않을경우 행정조치코져하니 반드시 기일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 평 면 장

봉 평 면

우 232-920 강원 평창 봉평 창동 346 - 1 / 전화 32 - 0103 / 전송 605 / 담당박 용 원

문서번호 봉평 58551 - 402
 시행일자 1996. 2. 26. ()
 (김 유)
 발음 평 창 군 수
 참조 도시과장 /

취 급	체 송	면 장	
보 존	년	태권	우일
부민장	서	서	서
기 안	박 용	산업개발계장	협조

제목 불법건축물 적발보고

평창군 봉평면 평촌1리 629번지상의 과 회중의 건축물이 불법으로 축조되어있는 것을 봉평 58551 - 2984 호 (1차)로 행정지시 한바 있으며, 구두상으로도 수차례 지시 하였으나, 이행치 않으므로 부득이 건축법 제 8 조 규정에 의거 불입과 같이 적발보고 합니다.

- 붙임 : 1. 불법건축물(축사) 통보 사본 1부
 2. 불법건축물 관리대장 1부
 3. 불법건축물 전경사진 1부
 4. 배치도 1부
 5. 평면도 1부
 6. 기존건축물대장 1부
 7. 배치도 현황 1부 (건축물, 하천, 농지) 끝.

봉 평 면 장

출 장 복 명 서

□ 일 시 : '96. 2. 27

□ 출 장 지 : 봉평면 평촌리

□ 건 명 : 하천점용허가의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사실확인

○ 허가내용

- 위 치 : 봉평면 평촌 1리 903번지선(인근지번(629번지(전)
- 점용면적 : 5,863㎡(농경지목적 : 전)
- 허가기간 : '95. 2. 27 ~ '99. 12. 31

○ 확인내용

- 건축물 신축(축사) 1동
- 면담확인내용
 - 면 담 자 : ~~봉평면 평촌리~~ ⁶⁴⁷ 629번지 과 회 중
 - 축사 1동(120평)은 '95. 11. 15일착공
 - 축사신축부지는 개인소유(전) 인줄알았으나 95년 12월에 측량결과 하천부지가 편입된 사실을 알았다고함

○ 주지시킨 내용

- 하천점용허가시 허가조건에 농경지 목적과 공작물등 타용도전용시는 별도 허가를 득한도록 되어있음을 주지시킴
- 따라서, 축사 신축은 불법용도변경 이므로 철거등 원상복구명령이 뒤따를 것임을 주지시킴

○ 향후처리외견

- 봉평면사무소 지방건축8급 박용원의 현지측량결과에 의하면 축사면적이 515.28㎡로 확인된바 이는 군에서 허가처리되어야 할 불법 건축물로서 앞으로 건축부서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지시를 할때 하천관련 부분에 대한 허가조건등의 위반사항과
원상복구등 조치사항을 포함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붙임 : 1. 광회중의 측사신축 전경사진 2매.
2. 지적도에 의한 하천불법전용 계략도 1부.
3. 현지조사 공무원의 불법건축물 면적 산출 내용 1부. 끝.

위와같이 복명 합니다.

1996. 2. 28

지방행정주사 이 영 범



담당자	계장	과장	부군수	군수	결재 일
				1996. 2. 28	2/28

평 창 군

232-800 강원 평창 평창 하리 210

/ 32-2011~18 행 4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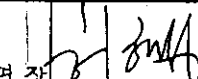
담당자 이 병 식

문서번호 도시 58554 - 336

시행일자 1996. 2. 29.

발 음 : 봉 평 면 장

참 조 :

선결	면장 		지시		
접	일자	시간		결	부담금
수	번호		재		
처	리 과			공	
담	당 자		람		
					계

제 목 : 위법건축물 조치사항 통보

1. 봉평 58551 - 402('96. 2. 26)호와 관련임.
2. 귀면 평촌리 629의 1필지 상에 건축시공된 평촌1리643 광희중 의 측사 건축물에 대하여 위호로 적발보고된 사항에 따라 건축법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불법건축물로 관계 기관에 고발하고 통보 하니 위법사항에 대하여 적법 이행토록 조치하기 바라며, 건축법 제6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법건축물 표식판을 설치하기 바랍.

위 법 건 축 내 역

협 의 자		주민등록 번호	건축 위치	구조	위법사항	용 도
주 소	성 명					
봉평면 평촌 1리 643	광희중	520309- 1105610	봉평면 평촌 리 629 903(천)	철파이프	449.4 m ²	측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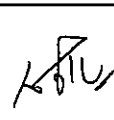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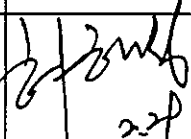
끝



평 창 군



분 법 건 축 물 처 리 계 획

- 명촌1리 광희중 축사건 -

담당	계 장	부면장	면 장	결
				재

협조 : 건축담당 박용원 
 하천담당 우경운 

불법건축물처리계획

1. 불법건축물 현황

- 위치: 평창군 봉명면 명촌리 629번지. 전 403번지
- 면적: 515.28㎡
- 용도: 축사 (특발발효우사)
- 건축주: 평창군 봉명면 명촌리 629번지 광희중 (43세)

2. 사업내용

- 사업명: '95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
- 사업량: 축사100명. 작유기 1조. 냉각기 1대
- 사업비: 계 53,000천원. 융자 35,991 ". 자부담 17,009"
- 융자액: 20,000천원 (사업공정 70% - 축사, 작유시설, 냉각기)

3. 축사건축물 신축경위

- '95 젖소 경쟁력 제고 사업대상자중 도암, 횡계리 이경희사업포기로 봉명면 명촌리 광희중이 희망 추가확정 (95. 10. 23) 되어
 - 축사시설 100명
 - 작유시설 1조
 - 냉각기1대를 설치코져 융자 35,991천원, 자부담 17,009천원등 총 53,000천원 하여 사업추진 (95. 11. 10)
- 기존축사 25명에 작유시설을 설치키 위하여 축사옆에 임시방목장을 마련하여 젖소를 방목하고있던중
- '95. 12. 9 축사신고서가 접수되어 선결처리과정에서 젖소방목으로 인한 하천오염 문제여론으로 가서르징구 증용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으며
- 방목금지로 기존축사에 젖소를 함께사육함으로 임신우 8개월된암소및 출산한 암소 2두가 다쳐 2백만원에긴급매각 약 5백만원의 경제손실초래
- 95. 11월말경 축산담당 변훈남, 건축담당 박용원이 현지출장하여 평면도 작성을 위한 실측당시 이미 명기초및 H빔이 설치되어있었음

4. 군으로부터 처리지시내용

- 건축법, 하전법에 대하여 조치계획수립처리 -
- 건축법 :

[신고당시 - 건축법시행령 11조2항 400㎡이하 신고사항 (388.8㎡)
]	현 제 - 건축법 제 8조 허가사항 (515.28㎡) - 96, 2, 26 적발보고 (측사 449.4㎡, 퇴비사 65.88㎡)
- 하전법 : 국유재산법 제 4조 같은법 제 24조 제 3항 (건물, 기타 연구시설물)을 축조할수없는건축물임 (무단점유 약 317 ㎡)

5. 조치계획

- 건축법 :- 신고당시 388.8㎡면적으로 접수되었으나 하전경계선불확실로 불법건축물 처리조치 (95, 12, 28 - 1차)
-현제 515.28 ㎡면적으로 허가대상및 건축법위반으로 적발보고 (96, 2, 26)
- 하전법 :-국유재산법 제 4조 같은법 제 24조 제 3항 (건물, 기타연구시설물) 축조할수 없는 건축물임 (무단점유 약 317 ㎡)
- 축산진흥발전기금
 - 건축법및 하전법에 저촉 철거대상으로 적발보고 (96, 2, 26) 되었으나 내무 16800- 371(96, 2, 26) 호에관련 능가손실을 최소화 하기위하여 기 용자금 대출액 20,000만원을 당분간 상환보류하고
 - 추후결정에따라 (건축물 이전축조또는 합법처리시) 처리할계획이며
 - 또한 용자금잔액은 사건처리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슴
(건축물 철거및 이전비용 약 23,000만원 소요)

봉평면 평촌리 관희중 축사 신축

하천불법 용도변경사항 조치 계획

결재	계장	과장	부군수	군수
	양기호	홍남진	홍경	김영욱

건 설 과

하천 불법 용도변경사항 조치 계획

1. 하천 불법 용도변경 현황

- 불법행위자 인적 사항
 - 주소 : 평창군 봉평면 평촌1리 643번지
 - 성명 : 곽희중(남44세)
- 하천점용허가내용
 - 위치 : 봉평면 평촌1리 903번지선(인근지번 629번지 : 전)
 - 점용허가면적 : 5,863㎡
 - 점용허가기간 : '95. 2. 27 ~ '99. 12. 31.까지
- 불법 행위 사항
 - 하천부지 약317㎡에 영구건축물인 축사 신축(사유지포함)
 - 축사신축면적 : 449.4㎡(515.28)

2. 하천관련 법령

- 하천은 국유재산법제3조에 의한 국유재산으로써 같은법제4조에 의한 공공용재산임.
- 국유재산법제5조(국유재산의 보존)
 - (1)누구든지 국유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한다.
- 국유재산법제24조제3항
 -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를 받은자는 그 허가 받은 재산상에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 국유재산법제52조(불법시설물의 철거)
 - 정당한 사유없이 국유재산을 점용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 기타 필요한 할수 있다.
- 국유재산법제58조(벌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하천법제81조(벌칙)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
2항 — 법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하천을 점용한자

3. 하천점용승인시의 승인 조건

- 시설된 공작물은 허가목적외 사용을 금한다.
- 허가 시설된 공작물을 변경 또는 유지보수시에는 별도의 허가를 득하여야한다.
- 본 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도 하천법규정에 준용한다.
- 공작물 설치로 인하여 홍수시 우수소통에 지장이 있을 경우 공작물의 철거 또는 우수 흐름의 방해요소를 즉시제거하여야한다.

4. 앞으로 조치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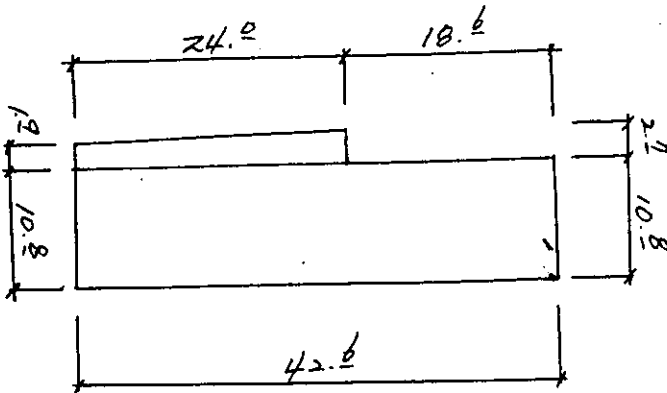
- 고발 : 국유재산법제58조, 하천법81조
- 원상회복의무 부여(하천법제35조)
 - 1차 : '96. 3. 1 ~ '96. 3. 30
 - 2차 : '96. 4. 1 ~ '96. 4. 15

불법건축물 관리대장

1. 건축물 위치 : 평창군 봉평면 평촌1리 629번지
2. 건축주 : 박 회 중
3. 건축규모 :

구 분	기 존 건 축 물	불 법 건 축 물
층 별	1 층	1 층
면 적	축 사 : 192.0 m ²	축 사 : 515.28 m ²

4. 건축물 실측도



축척 = 1 / 600

산 출 근 거

1. 42.6 * 10.8 = 460.08m²
 2. 1.9 * 24.0 = 45.6 m²
 3. 24.0 * 0.8 * 0.5 = 9.6 m²
- 계 = 515.28m²

조 사 자 : 지방건축서기

박 용 원 (인)

출 장 복 명 서

- 출 장 자 : 봉명면 지방토목서기 우 경 운
- 출장일시 : '96. 3.
- 출장장소 : 봉명면 평촌1리
- 출장목적 : 하전구역내 불법행위 단속
- 출장내용 : 하전구역내 위법건축물 적발


위반 행위자		위 치	위 법 사 항	관련법규	비 고
주 소	성명				
명장군 봉명면 평촌리 643	곽회중	명장군 봉명면 평촌1리 903 (흥정천)	하전부지내 축사신축 -건축면적 515.28㎡ -점유면적 317㎡	하전법 제25조	※하전점용허가 건설 제5-62호 ('95. 2. 23)

○ 조치사항 : 상기 하전법 위반자에 대하여 하전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적발보고코저 합니다.

붙임 : 시안서 1 부 끝.

상기와 같이 출장하였기 복명합니다.

1996. 3.

결	서	원	계	장	부	면	장	면	장
재									

봉명면 지방토목서기 우 경 운 


봉명면장 귀하

시 인 서

- 주 소 : 명장군 봉평면 평촌리 643번지
- 성 명 : 곽 회 중
- 주민등록번호 : 520309 - 1105610
- 위 치 : 명장군 봉평면 평촌1리 903(전)번지 (629번지인근)
- 불법 건축물
 - 용 도 : 축사
 - 건축면적 : 515.28㎡
 - 하천점유면적 : 317㎡
 - 구 조 : 철골조 아연

상기 본인은 상기위치내 축사를 건축함에 있어 하천부지에 저촉되는 불법사항이 있음을 시인합니다.

1996. 2 . .

시 인 자 : 곽 회 중 

“ 600년 심은뜻 2000년대 꽃피우자 ”

예 평 면

232 - 920 강원 명장 봉평 장동 346 - 1 / 32 - 0103 / 담당 우 경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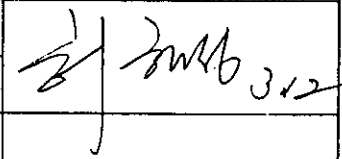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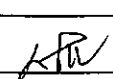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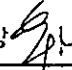
문서번호 봉평 58170 - 132

시행일자 1996. 3. 2

(경 유)

받음 명 장 관 수

참조 건 설 과 장

취 금	제 승	면 장
보 존	년	
부면장		
기 안		산업개발계장 

제목 하전법위반자 적발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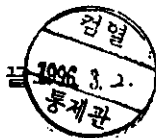
하전구역내 불법행위 단속중 아래와 같이 위법행위자가 있어 적발보고합니다.

위반 행위자		위 치	위 법 사 항	관련법규	비 고
주 소	성명				
명장군 봉평면 명촌리 643	곽희중	명장군 봉평면 명촌리, 903 (흥정전)	하전부지내 축사신축 -건축면적 515.28㎡ -점유면적 317㎡	하전법 제25조	※하전점용허가 건설 제5-62호 ('95. 2. 23)

붙임 : 1. 사진 1 부

2. 위치도 1 부

3. 평면도 1 부



예 평 면 장

7. 관계기관 고발현황

평 장 군

232-800 강원 평창 평창 하리 210

/ 32-2011~18 행 486

담당자 이 병 식

문서번호 도시 585b4 - 336

시행일자 1996. 2. 29.

받 음 : 평창경찰서장

참 조 : 수사과장

취급		군 수
보존		
부군수	박상만	이 병 식
과 장	김	지역계획계장 추상계장
기안	이 병 식	합 조

계 목 : 건축법 위반 혐의 관련자 고발

건축법 제8 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아래 건축내용의 행위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34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합니다.

발 사 항

혐 의 자		주민등록 번호	건축 위치	구 조	위법사항	용 . 도
주 소	성 명					
쌍평면 평촌 1리 643	곽희중	520309- 05610	쌍평면 평촌 리 629 903(천)	철파이프	449.4 m ²	축 사

○ 위반법규 : 건축법 제8조 (건축허가)

○ 적용법규 : 건축법 제79조

붙임 : 1. 고발서 1부

2. 임의 진술서 1부

3. 기타 관련서류 1부. 끝



(제 2 안)

발음 : 봉평민 평촌1리 643 과 회 중

제목 : 위법건축물 조치사항 홍보

귀하께서 건축한 봉평민 평촌리 629외 1필지 상에 축사용도의 건축물이 건축법제8조 규정을 위반한 무허가 건축물로 같은법 제7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관계기관에 외법조치 하였음을 홍보 하오니 '96. 3. 30 이전에 위법사항에 대한 자진철거등 적법조치 이행 하시기 바랍니다.

위법건축 내역

: 힘 의 자		주민등록 번호	건축위치	구조	위법사항	용도
주소	성명					
봉평민 평촌 1리 643	과회중	520309- 1105610	봉평민 평촌 리 629 903(천)	철파이프	449.4 m ²	축사



(제 3 안)

발음 : 봉 평 민 장

제목 : 위법건축물 조치사항 홍보

1. 광명 58551 - 402('96. 2. 26)호와 관련임.

2. 귀민 평촌리 629외 1필지 상에 건축시공된 평촌1리643 과회중 의 축사 건축물에 대하여 위호로 적발보고된 사항에 따라 건축법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불법건축물로 관계 기관에 고발하고 홍보 하니 위법사항에 대하여 적법 이행토록 조치하기 바라며, 건축법 제6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법건축물 표시판을 설치하기 바랍.

위법건축내역

혐 의 자		주민등록 번호	건축위치	구조	위법사항	용 도
주소	성 명					
봉평면 평촌 1리 643	곽희중	520309- 1105610	봉평면 평촌 리 629 903(천)	철골콘크리트	449.4㎡	축사

끝



평 창 군 수

고 발 서

피 의 자	본 적			
	현 주 소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평촌1리 643		
	성 명	곽 회 중		
	생년월일	520309-1105610	직 인	축산업

고 발 사 유	<p>○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400㎡ 이상의 축사를 건축시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득한후 공사 하여야 하나, 허가 절차없이 불법으로 건축하였으므로 같은법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처리 하였음</p> <p>- 건축위치 : 평창군 봉평면 평촌리 629. 903(천)</p> <p>- 건축규모 : 철파이프 구조 1층1동, 축사 연면적 449. 4㎡</p>
------------------	---

기 타 참 고 사 항	
----------------------------	--

적 용 법 규	건축법 제 8조 건축법 제79조
------------------	----------------------

위와 같이 곽 회 중 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 234 조에 의거 고발함.

19 9 6 년 2 월 29 일

고 발 인 : 평 창 군 수

평 창 경 찰 시 장 귀하

"친 사원 우리평창 흥개가꿈 미래의땅"
 평 창 군

232-8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 / 전화 (32-2011~18) / 전 송 (30-2491)

문서번호 건설 58000 - 333

시행일자 1996. 3. 2.

(제1안)
 발송 평창경찰서장
 참조 수사과장

취급		군수
보존	민	김용우 314
부군수	홍장	
과장	홍시민	
기안		지역계획과장 영배 협조

제목 하천법 위반혐의 관련자 고발

1. 도시 58554-336('96. 2. 29)호 관련입니다.

2. 하천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인가를 받은자가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가조건을 위반하여 불법 용도변경한 행위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34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 의 자		주민등록번호	하천위치	점용인가 면적	위 반 사 항
주 소	성 명				
봉평면 창동리 643	곽 회 중	520309 - 1105610	봉평면 평촌리 903번지(천)	5,863㎡	점용목적 농경지 (전) 317㎡을 대 지로 하여 영구시 설물인 축사신축

· 위반법규 - 국유재산법 제24조3항

하천법 제25조제1항4호

· 적용법규(법칙) - 국유재산법 제58조

하천법 제81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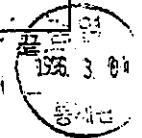
- 붙임 : 1. 고발서 1부
 2. 임의 진술서 1부
 3. 시인서 1부 끝.

건설 58000-

(제2안)
받음 봉평면 평촌1리 643 과 회 중
제목 하천불법 용도변경 사항 원상회복 지시

1. 귀하께서 '95. 2. 27 농경지 목적으로 하천점용 허가된 봉평면 평촌1리 903번지
천에 점용목적에 위배하여 영구건축물인 축사를 신축한바 이는 국유재산법 제24조3항 및
하천법제25조1항4호를 위반한 위법행위로서 관계기관에 의법조치 하였음을 통보하오니
'96. 3. 30이전에 원상회복 하시기 바랍니다.

허 가 사 항			위 반 사 항	불법용도 변경면적	비 고
위 치	점용목적	점용면적			
봉평면 평촌1리903	천	5,863㎡	농경지 목적허가 사 항을 대지로 하여 영구시설물인 축사 신축	317㎡	



(제2안)
받음 봉평면장
제목 하천불법 용도변경 사항 원상회복 조치

1. 도시 58554-336('96. 2. 29)호와 관련임
2. 귀면 평촌리 903번지선에 5,863㎡를 농경지 목적으로 점용허가 받은 평촌1리
643번지 과회중이 이중317㎡에 대하여 점용목적에 위배하여 영구시설물인 축사를 신축한
사실이 확인되어 국유재산법제24조3항 및 하천법제25조1항4호에 의하여 관계기고나에 고
발조치 하였기 통보하니 농경지 사용에 적합하도록 원상회복 토록 조치하기 바라며
3. 하천에 오염이 우려되는 발목해위 등 기타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끝. 1996. 3. 04

평 창 군 수

고 발 서

피 의 자	본 적			
	현 주 소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평촌1리 643번지		
	성 명	곽 회 중		
	생 년 월 일	520309-1105610	직 업	축산업
고 발 사 유	<p>○. 국유재산을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받은자는 그 허가받은 재산상에 건물 기타의 영구 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축사를 신축하여 이는 국유재법제24조3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불법행위임으로 국유재산법 제58조 및 하천법 제81조에 의거 고발함.</p> <p>- 점용위치 : 평창군 봉평면 평촌리 천 903번지선</p> <p>- 불법점용면적 : 317㎡</p>			

기타 참고사항	
적 용 법 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유재산법 제24조3항 · 하천법 제25조1항4호 · 하천법 제81조 · 국유재산법 제58조

위와 같이 곽회중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의거 고발함

1996 년 3 월 2 일

고 발 인 평 창 군 수

평창경찰서장 귀하

임 의 진 술 서

○ 진술인

· 소 속 : 평창군청 건설과 지역계획계

· 직 급 : 지방행정주사

· 성 명 : 이 영 범

주민등록번호 461208 - 1332529

○ 진술내용

· 상기본인은 1995년 8월 16일부터 소속지에서 현재까지 하천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오면서 금번 봉평면장과 관련한 감사부서의 위법 사항에 대한 통보를 받고 '96. 2. 27 현지 확인한 결과 봉평면 평촌1리 643 번지에 거주하는 광희중이 축사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국유재산법 제24조3항의 규정에 의거 건물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수 없는 국유재산인 하천을 불법용도변경한 사실이 확인되어 국유재산법제58조 및 하천법 제81조에 따라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봉평면 평촌1리 903번지선 천 5,863㎡에 대하여 '95. 2. 27농경지(전)' 목적으로 성토인가를 받았으나 건물기타의 어떠한 영구시설물의 축조는 허가될수 없는 불법행위를 하였습니다.

위불법 공작물축조 행위는 95년 11월 말경부터 96년 2월초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위불법 공작물의 부지는 봉평면 평촌리 천(소유자 : 국) 903번지선(인근지번 629번지 소유자 광정근)이며 약317㎡가 불법 용도변경 되었음을 진술합니다.

1996 년 3 월 2 일

위 진술인 : 지방행정주사 이 영 범



접수일시	1996. 3. 11	번호	1158		
제출부서				계장	이민

민원사건접수통지서

귀하께서 제출하신 곡 회중에 대한 취권행위인 사건을
 199 6 . 3 . 6 . 에 접수하여 본인이 담당 조사 처리토록 되었
 습니다.

본인이 취급하는 민원사건은 모두 건으로서
 귀하의 사건처리에는 30 일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라오며, 혹시 사건처리중 지연될 사유가 발생되면 즉시 중간
 통지를 하여 드리겠습니다.

또한 귀하께 참고로 조사할 사항이 있으면 출석요구를 하겠으니 지정된
 날짜에 나오셔서 본인을 찾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 6 . 3 . 6 .

평창경찰서 수사과
 (전화 평창 32-2112번) (D.D.D 0374)


계급 경사 성명 이민 이민





평창경찰서 (2112) 귀하

8. 감 사 결 과

蓬坪·坪村 곽희중

畜舍建立 및 放牧場設置에 對한 調查報告

원본대조필	1996년 3월 13 일
	직명 기양행정팀
	성명 곽희중 

담당자	계장	과장	부군수	군수	결재일자
					2/16

行政係長 

平 昌 郡

畜舎建立 및 放牧場設置에 對한 調查 報告

□ 畜舎建立敷地現況

- 위 치 : 봉평면 평촌리 하천 903번지선
 - '95. 2.23 : 성토후 토지사용을 목적으로 5,863㎡
하천부지 점용허가('99.12.31까지)
 - '95. 1 ~ 4월경 : '95평촌지구 경지정리 사업지구에서 토사
운반 성토
- ※ 젓소 43두 사육

□ 畜舎建立 및 放牧場 設置 推進經緯

- '95 젓소 경쟁력 제고 사업 대상자중 도암, 황계 이경희 사업
포기에 따라 봉평면 평촌리 곽희중이 추가 확정('95.10.23)되어
 - 축사시설 100평
 - 착유시설 1조
 - 냉각기 1대를 설치코자 융자 35,991천원, 자부담17,009천원
등 총53,000천원 투자하여 사업 추진('95.11.10)
- 기존 축사 25평에 착유시설을 설치키 위해 축사 옆에 임시방목
장을 마련하여 젓소를 사육하고 있던중
- '95.12. 9 축사신축 신고서가 접수되어 선결처리 과정에서 면장
이 젓소 방목으로 인한 하천오염 문제 여론을 의식 건축담당
박용원에게 각서 징구토록 지시 하였고,

12.29 면사무소를 방문한 광희중에게 산업개발계장이 「여론이 있다는」 사유로 각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동인이 각서 제출을 거부하자 축산담당 변훈남에게 각서 징구를 미룬다는 이유로 폭언에 가까운 불평을 토로하자 동인의 입장이 곤란하여 각서 제출

- 변훈남이 각서내용을 면장에게 보고하자 내용이 충실치 못하다는 지적과 동시 재작성 지시
- 방목금지로 기존 축사에 적소를 함께 사육하자 축사 협소로 임신후 8개월된 암소 및 출산한 암소등 2두의 적소가 다쳐 2백만원에 긴급 매각하여 약5백만원 경제적 손실 초래
- '95.11월말경 축산담당 변훈남, 건축담당 박용원이 현지에 출장하여 평면도 작성을 위한 실측 당시 이미 평기초 및 H빔 일부가 설치되어 있었음을 인지 하였으나, 동신축부지가 하천부지임을 이유로 농지전용신고, 건축신고등 제반 신고수리 절차를 미이행하였고, '축사신축 융자금은 '95.11.24 공정70%로 융자금 20,000천원 사업확인명세 발급

畜舎建立 및 放牧場 設置 問題點

1. 불필요한 행정지시로 농가불편 초래 및 경제적 손실 초래

- 기존축사 2동중 1동에 착유시설 설치 공사로 신축중인 축사 완공까지 일시 방목이 불가피 하여 축사 옆 부분에 목책을 설치코자 할 때에는 축산분뇨 유출 방지턱 및 간이차집 시설등을 설치하여 방목장을 일시 사용토록 행정지도 하여야 함에도,

- 대안 없이 하천오염 여론이 있다는 사유를 들어 방목금지토록 각서 징구를 면장이 지시 하였고 산업개발계장이 각서 징구시 축산농가에게 자세한 설명으로 이해 설득하여야 함에도 강압적 자세로 일관하여 징구

2. 관련공무원 행정지도 소홀

- '95젓소 경쟁력 제고사업 대상자로 교체선정 되었을 때에는 군 및 면 관계공무원이 사업조기 완공을 위해 축사신축 대상지에 대한 관련법을 검토하여 사전 지도 지원 하여야 함에도
 - 봉평면에서는 이에대한 검토 소홀로 축사 기초 및 H빔 기둥이 세워진 이후에 하천부지(사실상 전)약 317㎡가 편입된 사실을 인지 하고 '95. 12.18 불법건축물 공사중지 및 철거 지시후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
 - 축산과에서는 젓소 경쟁력 제고 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지도를 통해 농가의 어려운 문제점이나 애로 사항을 청취 관련부서 및 읍면에 대한 긴밀한 협조로 사전 해결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처리

□ 面長の 指揮能力 및 行態에 對한 問題點

- 방목금지 조치로 인하여 축산농가에 대한 경제적 피해 발생에 대해 군수의 전화 질책이 있자, 김춘경등 주민여론이 있어 방목금지 시켰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였으며, 확인결과(산업개발계장 면담) 봉평거주 김춘경은 이의제기 사실이 없으며, 그밖에 특별히 문제제기 주민은 없는 상태임.

- 축사신축 농가의 애로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해 주어야 할 면장의 입장에서 향후 하천 오염이 예측된다는 단순한 판단아래, 대안없이 각서를 징구토록 지시한 점은 지역문제 발생시 행정기관 변명용 자료 확보에 목적이 있다고 판단됨.

※ 축사 하천 점용에 대한 지도감독 면책 목적도 내재함.

- '96. 2. 1(목) 10:00경 총무계 근무 여직원 주경미에게 사직서를 전달 하였고, 계장들을 소집하여 사직서 제출 사실을 통지 하였으나 계장들의 만류 설득으로 입장 표명없이 불만 토로

※ 사직서 군에 미제출

- 동일 저녁 군의원, 지서장등과 소주를 마시면서 「군수가 축사건립을 지시 하였다는등」 사직서 제출 원인에 대해 불만 토로하여, 면장 사직서 제출 사실과 축사관련 내용이 경찰 첩보로 보고되고 일부 주민도 사직서 제출 사실 인지

- 2. 2(금) 10:00경 총무계장이 면장집을 방문하자 몸이 불편 하다는 이유로 13:00경 면사무소 등청

- 2월 일자 미상일에 신한국당 용평면 협의회장 심재국(44)등 일부 주민에게 평촌리 축사건립으로 팔석정 및 용평상수도 취수원인 흥정천이 오염 된다는 사실을 은밀히 유포하면서, 「본인은 축사건립을 반대 하지만 군수가 지시하여 축사를 건립하게 되었다는 등」 용평면 주민여론 조성을 부추기면서 「직을 걸고 축사신축을 반대」 한다는 내용도 전달

※ 주민여론 조성으로 방목금지조치 근거 마련 목적

〈 面長의 指揮能力 分析 〉

○ 대주민 이해설득 능력 부족 ⇒ 지역문제발생시 해결 지연

※ 봉평상수도 장소 문제

○ 공직자로서 소신 부족 ⇒ 명분 없는 지시나 주민어른 발생을
의식 문제발생시 적극적 해결대책
없이 관망

□ 關聯法 檢討

- 본 축사건립 부지인 평촌리 하천 903번지선은 하천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준용하천으로서 토지(전) 경작을 목적으로 같은법 제2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득 하였으나 부관에 구조물 및 공작물 설치를 금지하고 있고,
 - 국유재산법 제4조 행정재산중 「공공용재산」으로서 같은법 제2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하천에는 「건물 기타의 영구 시설물」을 축조할수 없음.
 - 관련법에 의거 원상복구 명령후 미이행시에는 대집행 실시가 불가 피함.
 - 다만, 같은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32조제1항 규정에 의거 하천 용도폐지후 매각한 때에는 가능하나 대상여부는 건설과에서 검토
- ※ 건축신고 및 농지전용신고도 하천법 저촉사항 해결후 가능

□ 向後 處理對策 (調查者 意見)

1. 축사 철거 여부에 대한 판단

- 평촌리 광희중 면담 결과 약12년간 양축농가로서 성실하게 일해온 것은 인정되나 토지 경계에 대한 착오로 축사 신축 부지가 본인 토지인줄 알았으며, 관련법 제규정에 대한 무지로 사업 확정이 늦어 동절기 이전에 축사를 신축코자 서두르는 과정에서 일어난 과실이며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됨.
- 축사 신축 위치는 흥정천 우수 경계선으로부터 약60M에 위치하고 있고 자연제방(잡목자연식생) 상태로 하천과 약2.5M의 표고차이가 있어 홍수시에 하천이 범람하지 않는곳으로 관련법 규정에 의거 철거 명령후 대집행 하여야하나 철거하지 않을 경우의 공익저해 요인과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비교 하여 볼때
- 축사건립으로 양육되는 축산분뇨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의거 신고대상 시설로서 처리하고, 방목으로 홍수시 흥정천에 일부 유입되는 분뇨는 방지턱과 차집 시설을 통해 방지대책을 강구하며, 기타 특별한 공익장애 요인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원상복구 명령후 철거 미이행시에는 행정 대집행은 불가피함.

※ 철거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하천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용도폐지 추진 방안 병행강구(건설과 지역계획계)

2. 축사용자금 집행대책

- '95절소 경쟁력 제고 사업비 이월 조치토록 대책 강구
(도 축산과와 협의)

봉평면 리장협의회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서

첫째, 광역상수도 광역쓰레기 매립장 전면 재검토와 관련하여

- 봉평면 원길리 흥정천에 설치코자 하는 상수도 설치공사는 '95.12.15 경산건설(주) 김종남과 기 계약체결한 상태로 다른 지역(상류)으로 이전은 계약상대방의 신뢰보호, 재설계 용역비 과다소요, 공사비용 절대부족등 현시점에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 봉평면 평촌1리에 설치코자하는 쓰레기 매립장은 미확정 상태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봉평면장 제3자 선임과 관련하여

- 인사권은 통상적으로 인사관계법령에서 정한 제 규정에 의거 지역개발과 주민 소득증대시책등과 관련된 업무추진력, 행정조직 지휘통솔력, 직무수행능력 평가 등을 종합·분석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인사권자인 「군수의 고유권한」이며
- 특히 읍면장은 지역 행정의 책임자로서 리더쉽이 있고 지역 주민과의 격의없는 대화로 주민의 욕구를 충분히 수렴, 각종 시책에 반영시켜 복지농촌 건설을 앞당길 수 있는 능력있는 공무원이어야 함은 물론,

과거 권위적 행정행태에서 과감히 벗어나 주민의 참된 머슴꾼으로서 분골쇄신할 수 있는 의지를 지닌·인물이어야 하기 때문에 현 면장을 심사숙고 끝에 임명하였습니다.

- 변화된 평창군의 참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단행된 금번 면장 인사는 봉평면 지역발전을 위해 취해진 저의 「변함없는 소신」이지, 결코 지역을 경시한 조치가 아님을 명확히 밝혀 두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봉평면사무소 직원에 대한 적절한 인사조치와 관련하여

- 맡은 바 직무를 소홀히 처리하거나, 조직결속을 저해하는 공무원, 지휘통솔능력이 부족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적절한 선에서 조직 활성화를 위해 사실 조사후 처리 하겠습니다.

넷째 및 다섯째, 군행정의 합리적운영, 향후 지역현안 발생시는 지역주민의견 적극 수렴과 관련하여

- 민선군수 취임후 의욕이 앞서 달라진 군정모습을 군민에게 보여주기 위해 전력투구하다 보니 행정의 합리적 운영에 다소 어긋난 점이 일부 있었슴도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며
- 향후 지역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수렴, 보다 나은 발전시책으로 군정을 이끌어 나갈 것을 약속하며, 계속해서 지역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속에 균형있는 지역 개발에 정진하겠습니다.

여섯째, 도민일보 강원일보, 반상회보 성명서 발표와 관련하여

- 전 봉평면장 사직에 따른 문제가 원인이 되어 발단된 이번 사태는 누구의 시시비비를 가릴것 없이 매우 유감된 일이며, 이지역에 살고있는 우리 모두에게 불행한 일인 동시에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 지난해 6.27 지방선거에서 군민의 지지에 힘입어 초대 민선 군수로 선출되어 지난 8개월동안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주민 소득증대, 과거 권위적 행정행태에서 과감히 벗어나 주민을 위한 참봉사 행정을 펼치고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 왔다고 감히 자부하고 있습니다만,
- 군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지역개발 및 주민 복지증진 시책에 대한 주민여론을 충분히 반영치 못한 점도 일부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이해 관계가 있는 주민에게 소외감을 주는 일이 있었다는 여러분의 지적에 대해서는 향후 군정시책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임을 명확히 밝혀드립니다.
-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읍면장의 인사문제는 지휘통솔력이 있고 각종시책에 대한 업무추진력이 있는 공직자를 인사관계 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명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니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인사문제에 대한 사전협의는 인사기법상 「득보다 실이 많은」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언론사 및 반상회보 성명서 발표요구사항은 본 답변서로 같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언론 보도 사항

사표강요 "일파만파"

平壤 동맹원 里長 19명·변영희의원 사퇴결의 의용소방대 해체

黃면장 郡守 지시 부당 道 監査에 진정

【平壤】 郡守 지시 부당 道 監査에 진정
 이 글에서는 郡守의 부당한 지시와 이에 따른 주민들의 진정, 그리고 관련 기관의 대응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郡守가 불법법망인간고여

平昌 소방도로內 건축물 증축 규제 실패

【특보】 평昌=소방도 평昌 郡守가 불법법망인간고여. 郡守가 건축물 증축 규제를 실패하여, 소방도로內에 건축물 증축이 계속되고 있다. 郡守가 건축물 증축 규제를 실패하여, 소방도로內에 건축물 증축이 계속되고 있다. 郡守가 건축물 증축 규제를 실패하여, 소방도로內에 건축물 증축이 계속되고 있다.

平昌 郡守가 건축물 증축 규제를 실패하여, 소방도로內에 건축물 증축이 계속되고 있다. 郡守가 건축물 증축 규제를 실패하여, 소방도로內에 건축물 증축이 계속되고 있다. 郡守가 건축물 증축 규제를 실패하여, 소방도로內에 건축물 증축이 계속되고 있다.

平昌 郡守가 건축물 증축 규제를 실패하여, 소방도로內에 건축물 증축이 계속되고 있다. 郡守가 건축물 증축 규제를 실패하여, 소방도로內에 건축물 증축이 계속되고 있다. 郡守가 건축물 증축 규제를 실패하여, 소방도로內에 건축물 증축이 계속되고 있다.

「사표강요」 특委구성

주요내용

【주요】 1. 1996년 3월 6일
2. 1996년 3월 6일
3. 1996년 3월 6일

1. 1996년 3월 6일
2. 1996년 3월 6일
3. 1996년 3월 6일

1. 1996년 3월 6일
2. 1996년 3월 6일
3. 1996년 3월 6일
4. 1996년 3월 6일
5. 1996년 3월 6일
6. 1996년 3월 6일
7. 1996년 3월 6일
8. 1996년 3월 6일
9. 1996년 3월 6일
10. 1996년 3월 6일

25일 '신문의 날' 기념대회

주최 「사법연」 대청중 공개사과등 이행 촉구

【서울=연합통신】 25일 오전 10시 서울 대청중에서 열린 '신문의 날' 기념대회에 30여개 언론단체 대표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사법연'이 주최한 '신문의 날' 기념대회에 30여개 언론단체 대표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사법연'이 주최한 '신문의 날' 기념대회에 30여개 언론단체 대표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연합통신】 25일 오전 10시 서울 대청중에서 열린 '신문의 날' 기념대회에 30여개 언론단체 대표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사법연'이 주최한 '신문의 날' 기념대회에 30여개 언론단체 대표 100여 명이 참석했다.

신문의 날 기념대회

1996年 3月 20日

행정부서도 '신문의 날' 축하

행정부서도 '신문의 날' 축하

【서울=연합통신】 25일 오전 10시 서울 대청중에서 열린 '신문의 날' 기념대회에 30여개 언론단체 대표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사법연'이 주최한 '신문의 날' 기념대회에 30여개 언론단체 대표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연합통신】 25일 오전 10시 서울 대청중에서 열린 '신문의 날' 기념대회에 30여개 언론단체 대표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사법연'이 주최한 '신문의 날' 기념대회에 30여개 언론단체 대표 100여 명이 참석했다.